

현안분석 2007-

비교법제 연구 07-09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V)

- 프랑스 -

박인수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V)

- 프랑스 -

A Study on Educational Legislation of EU(V)

- France -

연구자 : 박인수(영남대학교 교수)

Park, In-Soo

2007. 10. 31

국문 요약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교육제도를 가장 먼저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직업과 연구의 두가지 축에 직접적으로 결부하고 있는 프랑스는 교육의 자유·무상교육·중립교육·보통교육·의무교육을 교육제도에서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차원에서의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전통적인 중앙 집중적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1983년 이후 국가교육의 지방교육화 또는 지역화를 시행하고 있다. 오늘날 중앙집권적 교육과정과 지역교육청·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이 적절히 조화롭게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 사례로 프랑스를 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교육법제의 특색으로는 cycle 교육과정 운용과 그랑제꼴 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11개의 cycle을 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가 3개, 중학교 3개와 고등학교 2개, 대학교에서 3개의 cycle을 운용하고 있다. 각각의 cycle에 따른 교육과정은 프랑스 학생들로 하여금 반복적인 학습 내용의 확인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수준을 심화하도록 함으로써 학문에 대한 기초 개념을 충실하게 하며 나아가 교과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창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랑제꼴은 프랑스의 대학교육과정 중 실무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볼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프랑스 전역에 다양한 영역에 걸친 300여개의 그랑제꼴이 분포하고 있다. 일반대학이 개방적이고 교양을 갖춘 고등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본다면, 그랑제꼴은 폐쇄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전문직업인을 길러내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볼로냐 교육협약에 따라 이미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

등교육 영역에서의 LMD제도와 국제교류활동 및 외국어 교육 강화도 프랑스의 교육을 이해함에 있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키워드 : 프랑스 교육제도, 그랑제꼴, 사이클 교육과정, 바칼로레아, LMD과정

Résumé

L'histoire du système éducatif, en France, a partie liée avec celle du régime républicain : les principes de laïcité, d'obligation scolaire et d'égalité, aujourd'hui réaffirmés comme étant au cœur des missions de l'École, ont été proclamés dans les premières années de la III^e République.

Le domaine de l'éducation est régi par des principes fondamentaux dont certains sont formulés dans la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d'autres par la loi. L'ensemble des textes réglementaires concernant l'éducation sont réunis dans le code de l'éducation.

Depuis les années 1980 en France, l'État a engagé une opération de décentralisation des compétences qui renforce le poids des collectivités locales.

Il s'agit de deux particularités dans le système éducatif français, d'une part, le régime de cycle, d'autre part les grands écoles au niveau de l'enseignement supérieur.

Chacun des trois cycles de la scolarité primaire : cycle des apprentissages premiers, cycle des apprentissages fondamentaux, cycle des approfondissements. Depuis 1996, l'organisation pédagogique du collège est fondée sur trois cycles : le cycle d'adaptation (classe de sixième), le cycle central (classes de cinquième et de quatrième), le cycle d'orientation (classe de troisième)

Parmi les écoles supérieures, les "grandes écoles" constituent une particularité française : ce sont des établissements très sélectifs qui accueillent beaucoup moins d'étudiants que les universités. Les "grandes écoles" forment des ingénieurs et des managers de haut niveau, mais aussi des spécialistes de l'art, des lettres et des sciences humaines.

Dans le cadre de l'harmonisation des cursus d'enseignement supérieur européens par les conventions de Boulogne, le cursus universitaire français s'organise désormais autour de trois diplômes : la licence, le master et le doctorat. Cette nouvelle organisation, dite "L.M.D.", permet d'accroître la mobilité des étudiants européens, la mobilité entre disciplines et entre formations professionnelles et générales. A la rentrée 2006, 100% des universités et des grands établissements français sont entrés dans la nouvelle architecture européenne des diplômes. Le renforcement de la langue étrangère résulte de l'introduction de la nouvelle organisation, dite "L.M.D." La construction de l'espace européen de l'enseignement supérieur, associe aujourd'hui près de 45 pays d'Europe.

Keywords : le système éducatif français, les grandes écoles, le régime éducatif de cycle, le baccalauréat, l'organisation de L.M.D.

목 차

제 1 장 서 론	11
제 2 장 교육제도의 기본원칙과 법원(法源)	15
1. 기본원칙	15
2. 교육법의 法源(법원)	17
제 3 장 국가교육과 지방교육	21
1. 국 가	22
2. 광역권 자치단체	22
3. 광역지방자치단체	23
4. 기초지방자치단체	23
제 4 장 유아교육제도	25
1. 등록 및 입학	25
2. 유아교육 프로그램	27
3. 학교 생활	29
4. 유아 체육교육	34
제 5 장 초등학교교육	35
1. 입 학	35
2. 초등교육 프로그램	38
3. 초등학교 생활	45
4. 초등학교 식당 운영	47

5. 초등학교 보험	49
6. 특별 제도	50
7. 재정적인 지원	52
8. 학생회	52
9. 상업적 중립의 원칙	53
10. 초등교육에서의 스포츠와 체육교육	53
제 6 장 중등교육	55
1. 중학교 학사과정	55
2. 재정상의 원조	57
3. 기숙 제도	58
4. 중학교의 식당	59
5. 학생 보험	61
6. 중학교의 스포츠	61
7. 중학교에서의 건강	61
제 7 장 고등학교교육	63
1. 고등학교 입학	64
2. 고등교육과정	66
3. 수료증과 증명서	72
4. 고등학교에서의 건강	74
5. 특별한 요구 사항	75
6. 재정적인 지원	76
7. 고등 체육교육	79
8. 학교 보험	79

제 8 장 대학교육	81
1. 그랑제꼴	81
2. 일반종합대학	82
3. 대학의 법학교육	83
제 9 장 결 어	97
참 고 문 헌	101

제 1 장 서 론

사회의 변화 속도와 대비해 볼 때 우리의 교육 현장은 이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은 갈수록 방대해 지고 학생들의 학습량도 기하학적인 증대일로에 있지만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은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공교육의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달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2003년부터 고등교육제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교류교육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수준에서의 고등교육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으므로 지역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을 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고 인간본위의 교육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교육법제 중 핵심이 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cycle¹⁾로 순환되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는 11개의 cycle이 운용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가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대학교에서 3개의 cycle을 운용하고 있다. 각각의 cycle에 따른 교육과정은 프랑스 학생들로 하여금 반복적인 학습 내용의 확인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수준을 심화하도록 함으로써 학문에 대한 기초 개념을 충실하게 하며 나아가 교과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창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의 3개의 사이클은 초보학습기, 기초학습기, 심화학습기로 대별할 수 있으며, 연령별로는 유치원 3-5세가 초보

1) cycle의 개념은 아동들의 학습발달과 지적 능력의 평가가 밀접하게 관련된 기능적인 교육학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학습기, 유치원5세에서 초등학교 6-7세까지가 기초학습기, 초등학교 8-10세까지가 심화학습기에 해당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이클은 1996년까지는 각 2개씩의 사이클로 구분하여 관찰기, 지도기, 결정기, 최종기로 분류하여, 연령별로는 중학교 11-12세, 중학교 13-14세, 고등학교 15세, 고등학교 16-17세가 각각의 사이클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중학교 과정은 3개의 cycle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 학년 개념으로 6학년2)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응기, 5학년과 4학년의 기간 동안을 중심기, 3학년의 기간을 지도기로 나누고 있다. 대학교에서의 3개의 사이클은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사이클로 활용되고 있다. 각각의 사이클에 해당하는 기간은 1989년 8월 제정된 교육기본법 (la loi d'orientation)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서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평가 기준과 연간 학업의 향상정도, 능력과 적성에 따른 다양하고 연속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는 평준화교육에 두고 있으면서도, 대학교육에 이르러서는 평준화교육과 함께 엘리트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엘리트 교육은 다시 실무 엘리트 양성교육과 이론 엘리트 양성교육으로 대별되며, 실무엘리트 양성을 맡고 있는 교육기관이 그랑제꼴로써 프랑스에 특유한 교육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론분야 엘리트 양성은 박사과정의 최종학위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실무와 이론을 교육과정과 교육목표에서 분리하고 있는 프랑스적 교육 전통은 중학교 제2기 사이클에 해당하는 지도기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고등학

2) 프랑스 학생을 학년별로 나타낼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으로 총 12년의 중등교육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학년을 부를 때는 고등학교 3학년은 마지막 해라고 해서 학년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2학년을 프랑스에서는 1학년이라고 부르며,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11학년으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중학교 1학년생을 6학년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교를 일반계 고등학교와 기술계 고등학교로 분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법제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제도를 재구축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지식강국으로 재도약하게 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프랑스 교육법제의 내용 중 교육제도의 기본원칙과 법원, 교육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의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교육제도의 기본원칙과 법원(法源)

1. 기본원칙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1789년 대혁명 시에 확립되었던 기본원칙들과 1881년에서 1889년간에 제정되었던 법률,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서 제정된 법률, 현행 제5공화국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교육제도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공교육, 의무교육, 무상교육, 보통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1) 교육의 자유

프랑스에서 교육은 공립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의 통제와 지원을 받는 사립교육기관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교육을 구성하고 가르치는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을 구성하고 가르치는 자유는 교육의 자유와 사립학교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1959년 12월 31일 드브레 법률 (loi Debré) 제59-1557호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학점과 학위를 수여하는 권능은 국가만이 보유하며, 사립학교에서 교부하는 학위는 국가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공식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각종 시험에 대한 규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

(2) 무상교육

공립 초등교육에서 무상교육의 원칙은 19세기 말경 1881년 6월 16일 법률에 의해 확립되어졌다. 이어서 1933년 5월 31일 법률에 의해 무상교육은 중등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무상교육은 초등학교와 공립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교과서와 단체용 문

구류와 학습재료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의 구입비용을 학부모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중립교육

공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철학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나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중립성이 요구된다.

(4) 보통교육

종교영역에서의 보통교육은 19세기 말 이래 프랑스 교육제도의 주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 공교육기관은 1882년 3월 28일 법률과 1886년 10월 30일 법률이 시행된 이후 탈종교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보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탈종교적 성격은 인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국가의 교육철학에 있어 보통교육의 원칙은 국가의 탈종교적 성격을 명시하고 있는 1905년 12월 9일 법률에 의해 강화되어졌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앙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종교적 내용을 배제하고 개종권유를 금지하며 교육자의 탈종교를 통하여 보장한다.

(5) 의무교육

의무교육제도는 1882년 3월 28일 페리법률(loi Jules Ferry)에 의해 확립되었다. 의무교육은 6세부터 적용되며 프랑스 아동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아동도 그 대상이 된다. 초기에는 의무교육의 연령을 13세 까지로 하였으나, 1936년 8월 9일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14세로 하였다. 1959년 1월 6일의 법률명령 제59-45호가 시행된 이후부터 의무교육 연령은 만 16세까지로 연장되어졌다.

의무교육을 행하는 방법은 각 가정별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는 사전에 미리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가정에서 직접 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는 공립 또는 사립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가정에서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교육법의 法源(법원)

교육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법률에 의해 적용되는 원칙들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에 관한 근거 규범들은 교육법전(code de l'éducation)에 통합되어 있다.

제5공화국 헌법은 “국가는 아동과 성인의 교육, 전문교육, 문화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회균등의 원칙·교육을 받을 권리·무상교육과 보통교육의 원칙에 따른 공교육을 제도화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프랑스 교육제도에 관한 다른 기본원칙들은 헌법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교육에 관한 법률들은 특별법과 매년 교육부 예산을 규정하는 예산법률로 존재하고 있다.

(1) 현행 기본적 법률

프랑스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 법률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들이 있다.

학교 미래를 위한 계획과 방침법률(2005. 4. 23 제 2005-380호)이 프랑스의 청소년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법률은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언어교육의 상황을 재확립하고자 하고 있으며, 기회 균등의 원칙을 보다 잘 정착하여 청소년의 일자리와 고용을

장려하고자 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공화국 가치들을 보다 잘 준수하게 하고, 교육기관과 교육내용을 보다 잘 정비하고, 교육제도를 보다 잘 관리한다는 세가지의 기본 내용에 따라 국가교육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³⁾

근로, 고용 및 직업교육에 관한 5개년 법률(1993. 12. 20 제93-1313 호)은 16세에서 25세까지의 청소년의 자격에 따른 행위들을 지방분권의 대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1989년 7월 10일 방침법률 제89-486호는 교육을 국가의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해 교육주기 뿐만아니라 실습주기(les cycles d'apprentissage)를 재구성함으로써, 교육제도에 관한 입법을 수정 보완하였다.

지방분권법(1983. 7. 22. 제83-663호 제정, 1985. 1. 25. 제85-97호 개정, 2004. 8. 13. 제2004-809호 개정)에 의하여 지역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와 광역권자치단체로 이양하였으며, 지방 공립학교로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통적 법률

프랑스의 경우는 법률이 제정된 연도가 오래된 것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고 있는 규범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현재에도 지속하고 있는 오래된 규범들이야말로 프랑스의 전통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법률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 학교에 관한 모든 법률의 내용에 대하여는 EduScol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 기술교육방침법(1971. 7. 16. 제 71-577호) :
실습교육을 확립하였으며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원칙화하고 있다.
- Edgar Faure 법률(1968. 11. 12 제 68-978호)과 Savary 법률(1984. 1. 26 제84-52호) :
고등교육을 3기 과정으로 분류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의 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 Debré 법률(1959. 12. 31 제 59-1557):
국가와 사립학교간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에 의하여 사교육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교육기관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사립학교는 승인되고 있다.
- Astier 법률(1919. 7. 25) :
상업 및 산업 기술교육을 제도화하고 있다.
- Goblet 법률(1886. 10. 30) :
공교육기관의 교육자에 대한 종교적 중립성과 초등학교의 기본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Ferry 법률들 또는 제3공화국 법률들 :
1881년 6월 16일 법률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의 완전무상교육제도가 확립되었으며, 1882년 3월 28일 법률과 1886년 10월 30일 법률에 의하여 남녀학생에 대한 차별없는 의무적 초등교육제도와 종교적 중립을 요구하는 보통학교제가 시행되었다.
- Guizot 법률(1833. 6. 28) :
기초자치단체에게 한 개 또는 복수의 초등학교 운영에 대한 일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교육대학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 Wallon 법률(1875. 7. 12) :
고등교육의 자유를 확립하였다.
- Falloux 법률(1850. 3. 15) :
사교육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공적 지원을 허가하는 교육의 자유를 규정하였다.

(3) 교육계획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들 이외에도 교육개혁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부에서는 교육계획의 이름으로 이를 수립하여 행하기도 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Berthoin 계획을 들 수 있다. 1959년 시행된 Berthoin계획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의무교육 연령 14세가 16세 까지로 확대 적용되었다.

(4) 교육법전

교육법전은 프랑스 교육제도에 관한 규범 전체를 통합하고 있으며, 프랑스 교육의 기본원칙, 교육기관, 교육내용, 고등교육과 교육 담당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통합교육법전에 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관계인들은 100여개의 법률들로 흩어져 있는 교육관련 내용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교육에 관한 권리를 실현하고 있다.

제 3 장 국가교육과 지방교육

프랑스는 국가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전통적인 중앙 집중적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1983년 이후 지방분권화와 1981년 영국의 교육특구지역정책을 참고하여 시행한 교육투자우선망 (REP) 정책의 차원에서 국가교육의 지방교육화 또는 지역화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교육은 지역 교육청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지방교육으로 옮겨가고, 교사에게는 교육내용 선정, 교과서 채택, 평가도구의 사용, 학습조직의 방식, 수업방법의 변화 등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⁴⁾.

프랑스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 또는 지방교육화는 교육부 직제 조직인 학교교육부 (DESCO, Direction de l'enseignement scolaire)와 지역 교육청에 해당하는 아카데미의 장 (Recteur)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아카데미에서 학교 수준으로의 교육과정 이전은 동일한 과정으로 아카데미의 장과 관내 지역의 학교장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과별 프로그램의 내용 정도만 제시할 뿐이다. 학교는 해당 지역의 여건,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와의 연계성, 지방 및 지역의 공공단체가 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프로젝트 또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⁵⁾.

국가교육의 지역화 이후 프랑스 교육은 국가교육과 지방교육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지방교육은 다시 광역권 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4) 황성원, 프랑스의 국가 교육과정 지역화 방식에 관한 연구, 비교교육연구, 11(2), 2001. 12, p.123.

5) 상계논문, p.105.

1980년대 이래 국가는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권한의 분산절차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1. 국 가

교육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담당하고 있는 영역을 구별하고 있으며, 국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하고 있다.

- 교육 기본 학제, 국가 교육 프로그램의 확정, 교육의 내용과 조직
- 국가학위의 운영과 수여, 대학교육의 자격과 단계적 등급 부여
- 교육직 국가 공무원을 비롯한 인적 자원의 충원과 관리
-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육에 배정하는 예산 등 자원의 분배
- 교육제도의 통합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통제와 평가

2. 광역권 자치단체

프랑스의 지방교육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지역화로서 교육부에서 지역 아카데미로의 교육과정 전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의 활성화는 지역 아카데미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교육을 특성화하는 프로젝트를 개발 시행하는데 있으며, 지역 아카데미의 교육방향 및 계획을 지역의 학교가 교육과정에 반영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 아카데미는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화 계획을 강조하여 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아카데미는 학교 교사들이 팀을 형성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학교 프로젝트를 아카데미 소속 지역 장학사들이 검토, 분석, 평가하여 학교장들과 협

정을 맺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교육의 지역화 방식과 동일한 과정이며 협정기간도 보통 3년 정도 지속하고 있다⁶⁾

광역권 자치단체는 다음의 영역에 관하여 책임을 맡고 있다.

-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 고등학교의 건축과 공사
- 고등학교의 설비 및 운영 경비 보조금 지급
- 고등학교의 교원, 기능직원, 기술직원의 충원과 관리
- 학교 지역에서의 교육, 체육 및 문화 활동의 조직
- 지역 대학의 재정에 대한 일부 지원
- 취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연수를 위한 지역별 정책

3.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영역에 관하여 책임을 맡고 있다.

- 중학교의 건축과 공사, 중학교의 설비 및 운영 경비 보조금 지급
- 중학교의 교원, 기능직원, 기술직원의 충원과 관리
- 학교 지역에서의 교육, 체육 및 문화 활동의 조직
- 학생 교통수단의 조직과 운영
- 광역 지방 의회에 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립 중학교 학생 모집 학군 설정

4.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영역에 관하여 책임을 맡고 있다.

-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설립, 건축, 설비, 운영 및 유지
-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시설비와 운영비 관리
- 학교 지역에서의 교육, 체육 및 문화 활동의 조직

6) 황성원, 상계논문, pp. 123- 124.

제 3 장 국가교육과 지방교육

- 학생 등·하교 시간 조정, 일주일 중 4일 교육제 등 수업일수 조정
- 교원 이외의 직원 관리
- 기초의회는 가계 생활곤란자들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내에 학교기금설치를 의결함

각급 학교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영역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질적인 투자(건축, 재건축) 및 운영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광역권자치단체	국가 및 설립자
교육 기자재 확보 (컴퓨터, 애플시설)	기초자치단체	국가	국가	국가 및 설립자
교원 (충원, 연수, 급여)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기술직, 의료직, 행정직원	국가	국가	광역권자치단체	국가
기능직원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광역권자치단체	국가
교육프로그램	국가	국가	국가	국가
졸업증서 수여	/	국가	국가	국가

제 4 장 유아교육제도

프랑스의 유아교육은 초등학교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취학 전 교육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모와 아동에게 가장 높은 만족율과 컨센서스를 제공해 주는 교육과정이다.

유치원은 세 개의 학년으로 구성되고, 주로 나이에 따라 소반(3세), 중반(4세), 대반(5세)으로 분류한다. 초등학교와 연계교육을 위해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를 합하여 세 개의 cycle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유치원 소반과 중반을 합하여 제1cycle에 해당하는 초보학습기, 유치원 대반에서 초등학교 2학년 까지를 제2cycle인 기초학습기,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를 제3cycle인 심화학습기로 나누어 단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있다.

1. 등록 및 입학

프랑스 교육의 특수성으로 중요한 점은 자녀의 취학연령을 3세부터 한다는 것이며, 프랑스 공립 유아학교는 무료이다.

(1) 입학연령

프랑스 국적과 외국인 국적의 유아들은 3세부터 입학이 가능하다. 만약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허락된다면 2살의 유아도 입학이 가능하다. 단, 육체적·정신적으로 다른 유아들과 원만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2) 입학학교

학부모는 자녀를 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다. 공립

학교에 맨 처음 입학할 시키려면 거주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관한 정보를 시청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만약 자녀를 거주지 내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한다면 시청에 가서 예외로 적용되는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자녀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외의 다른 거주지에 있는 학교에 등록을 시키는 것 역시 시청에 가서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야 한다.

관련부서에서는 거주지에 학교가 없거나 혹은 특별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학부모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 이 관련부서에서는 학생을 유아교육기관에 입학시킨 이후에도 모든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3) 등록방법

등록을 원하는 학부모는 관련서류7)를 시청에 제출하면 시청에서는 자녀가 배정받은 학교의 등록에 관련된 서류를 학부모에게 교부하며, 학부모는 그 서류와 학교에 제출할 서류8)를 같이 동봉해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는 해당학교의 원장 선생님에 의해 등록된다. 등록은 늦어도 6월 입학 전에는 마쳐야 한다. 자녀가 학교를 옮기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등록을 다시 갱신 할 필요가 없다.

(4) 전학관련 준비사항

전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해당 학교장에게 먼저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학교장은 전학증명서를 학부모에게 교부하여주며, 이에 따라 이사할 해당 거주지의 시청에 관련서

7) 가족수첩, 신분증 또는 호적초본이나 출생증명서 복사본, 주거증명서류, 그리고 해당 자녀가 예방접종을 받은 확인 서류(디프테리아 예방, 파상풍 예방, 소아마비 예방, B.C.G 접종 혹은 예방접종의 비적응증 확인서류)

8) 가족수첩, 신분증 혹은 호적초본이나 출생증명서 복사본, 시청에서 교부 받은 입학 서류, 가족의료보험에서 해당 자녀의 건강진단서, 의무 예방접종을 받은 확인서류.

류9)를 구비해 제출한다. 해당 거주지의 시청에서는 자녀가 새로 배정 받은 학교와 등록과 관련한 서류를 학부모에게 교부해 준다. 학부모는 교부받은 서류와 전학관련 서류10)를 새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는 해당학교의 원장 선생님에 의해 등록된다.

2. 유아교육 프로그램

유아교육을 통해 아동들은 조금씩 가족 밖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알게 되고, 익숙해지게 된다. 또한 아동들은 활동을 통해 주요한 언어구사력을 익히게 됨으로써 언어를 습득하고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해 나아가게 된다. 또한 감각기관을 발달시키고 예술에 민감해지며, 점진적으로 훈련과 실습을 통하여 성장하게 된다. 주당 유아의 학습시간은 평균 26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유아들의 학습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이뤄진다

(1) 언어활동

언어활동의 기술은 다른 주요 학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대화를 통한 언어의 상기와 환기 학습을 통해 유아들은 점점 더 복잡한 발표와 언어를 구사 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게 된다. 대화 학습은 쓰기의 밑바탕이 되고, 읽기의 준비과정이 된다.

(2)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활을 통한 배움은 유아 교육의 가장 주된 목적이다. 공동체 생활은 각각의 유아들에게 집단의 명확한 규율과 규칙을 배울 수

9) 신입학 당시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유형의 서류임.

10) 신입학 당시의 학교에 제출한 서류와 함께 시청에서 새로 교부 받은 입학서류와 이전 학교에서 교부한 전학증명서를 첨부한 것임.

있게 하고, 공동체의 일환으로 자각하게 한다. 팀별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방면의 다양한 활동은 유아들에게 관계를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아들은 또래와의 협동심을 익히게 된다. 또한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고 단체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아들은 조금씩 학교 언어를 이해하고 단체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3) 신체를 활용한 움직임과 표현

6세나 7세까지는 신체를 이용한 활동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표현력과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지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4) 세계(사물)에 대한 공부

유아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풍부하고 넓은 세계에 대한 발견과 현존하는 사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놀이학습과 경험을 통해 중요한 인식력과 이해력을 습득하게 되며, 유아들은 사물을 관찰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도구를 이용하고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고, 사건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민감성, 상상력, 창조력

이 분야는 시각과 촉각의 활용, 청각과 발성을 이용한 놀이를 통해 감각기관의 발달과 예술 활동을 접목시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작업과 실험에 친숙하게 하는 것이 이 분야의 주된 목표이다.

3. 학교 생활

(1) 학교생활과 건강

1) 법정 예방접종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기위해서 법정 전염병¹¹⁾에 대한 예방접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다른 질병¹²⁾들도 예방접종하기를 강하게 권고한다.

2) 건강진단

첫 번째 건강진단은 5세에서 6세 사이에 행해진다. 이 신체검사는 장애나 작은 문제¹³⁾들을 체계적으로 조기 진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 부모 중 반드시 한명이 동반해야 하며, 부모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고용주에게 자녀의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소집장을 제출해 양해 및 허가를 구할 수 있다.

3) 진단서

각각의 검사 항목은 교육부의 의료진에 의해 각각의 아동별로 “학생 건강기록부”에 개별로 기록되어 남겨진다. 이 건강기록부는 비밀문서로 취급된다. 학부모는 교육부의 의료진에게 개별로 요청하여 약속을 잡아 기록부를 볼 수 있고, 의료진에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4) 학교에서의 응급처치와 치료

공공교육기관과 학교에서의 응급처치는 2000년 1월 6일 공식 국가 의정서(Un protocole national sur l'organisation des soins et des urgences)

11)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중증 백일해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결핵 (BCG)

12)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ROR)

13) 시력, 청력, 언어장애, 발달장애등

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공식 국가의정서에는 위급한 경우에 필요한 지침들이 안내되어 있으며, 언제라도 전화로 응급 구조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나 장애아동들의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맞는 약물을 처방받거나 혹은 필요한 용구나 물품들을 의무실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¹⁴⁾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응급상황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응급서비스센터나 의료원과 협력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위급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원장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상황을 알려야 한다.

(2) 학교식당

취학아동의 영양섭취는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에 필수적이고 학습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신선하고 다양한 음식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¹⁵⁾. 학교식당에서는 까다로운 요건에 부응하여 학교급식 질의 담보, 특히 식품안전에 연관된 질문에 관한 정보를 부모들에게 알려준다.

유아 및 초등교육의 급식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이자 책임 하에 있다. 따라서 급식서비스의 질은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식당의 서비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과체중과 고도비만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¹⁶⁾

(3) 학교 보험

실제로 학교보험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지만 법률상 의무

14) 의정서에 의한 약물 처방은 의무실이나 구조원의 왕진을 통해 얻을 수 있다.

15) 하루 총 에너지 중 20%는 아침에, 40%는 점심에, 10%는 4시경에, 30%는 저녁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16) La circulation n° 2003-210 du 1er décembre 2003 정치 부분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 방과 후 학교 주변 활동이 점차 다양화됨으로써 더 이상 명확하게 필수적인 정규 교육과 방과 후 임의적 교육 활동을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교 주변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활동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나 소풍·여행 등의 활동에 대비한 보험가입 역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면 학교보험 가입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부모 협의회에서 보험 서류를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¹⁷⁾

(4) 특별 제도

만성 질환이 있는 유아와 장애유아 및 이민 유치원생과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개개인에게 적합한 형태의 교육을 연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 만성질환이 있는 유아와 장애유아

2005년 2월 11일부터 장애아동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교육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는 장애아동들을 위한 평등권, 기회균등, 참정권 그리고 시민권의 신장을 위한 것이다. 법안들은 장애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책임과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형태의 교육을 연속적으로 시행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관할 지역의 각 학교에서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학생을 받아들일 의무와 책임이 있어 부모의 요청이 있다면 장애유아를 3세부터

17) 유포 통제에 관한 내용은 une circulation du 29 août 1988(B.O. N° 28 du 01.09.88)에 명시돼 있다.

해당 거주지역의 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다. 다른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등록은 현행법의 절차에 따라 거주지 근처의 시청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해진다. 등록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교육부는 2005년 2월 11일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에서는 장애아동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교교육을 보장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평가해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에 따른 장비와 부속물, 보조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⁸⁾. 모든 장애아동은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필요한 장비와 부속물에 대한 평가는 다방면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는 위원회와 자치기구에 의해 행해진다.

학부모는 자녀를 입학시키기 전, 자녀를 더 나은 교육환경과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원장에게 자녀에게 필요한 장비와 부속물에 관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학교교육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장에게 사전에 필요한 장비와 부속물에 관해 미리 요구하는 것은 제도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교육과 관련한 위원회 혹은 기구가 미리 결합해 장애유아를 받아들인데 필요한 환경에 관한 평가와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며, 이에 관해 지역의 여러 분야 위원회들(M.D.P.H)이 회합, 중재의 과정을 통해 교육환경을 수정하고 개선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입학과 동시에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학교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유아의 취학을 위해 사전에 미리 교육환경을 정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만큼 심각한 건강상의 악화로 인한 문제는 사전에 필요한 장비와 부속물을 갖춰놓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부 의료진과의 협력이나 임산부·유아보

18) 치료상 필요 혹은 재교육을 위한 부속물, 학교생활의 보조자 배정, 맞춤형 교육의 설비,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적인 장비들의 지원

호센터의 서비스, 가족의 요구와 원장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학교교육은 가족의 요구나 학교 교육위원회 혹은 교육과 관련된 기구들에 의해 수정되고 재검토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에 필요한 장비와 부속물에 관해 미리 요구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교육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다.

2) 이민 유치원생과 전학생

유아교육 학교는 프랑스에 이민 온 새로운 아동들과 전학생들을 문화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사회적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은 프랑스 언어의 구사력이 필수적인 요건이다.¹⁹⁾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새 언어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불리한 핸디캡이거나 어려움이 아니다. 특히 언어의 각 대화자가 동일화되고 명확한 자세와 태도로 유아에게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할 때는 프랑스어를 제 2언어으로써 정리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매일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는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고 유아를 더 자주 자극 시키는 수업을 효과적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인구, 즉 서커스 단원이나 직업적인 이유²⁰⁾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경우가 문제된다. 이러한 부모들의 자녀들 역시 다른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일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개근하는 기간과 정지하는 기간의 유형을 적용하지만 다른 교육활동에서는 프랑스에 이민 온 새로운 아동들 및 전학생들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

19) 그들에게 최고의 학습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학교와 프랑스정부의 의무이자 책임 및 과제로 보고 있다.

20) 뱃사공, 행상인서커스 단원 등

4. 유아 체육교육

프랑스 유아교육에서는 체육교육을 매개로 하여 중요하고 필요한 자극을 주는 활동기회를 부여하고 있다.²¹⁾

유아시기의 체육교육은 여러가지 종목²²⁾으로 구성되어 만들어 진다. 학교에서는 유아들에게 스스로의 육체적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하는 여러 분야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룹으로 하는 놀이를 통해 활동을 다양화하고, 적당하게 하는 것을 자극하고, 감정과 감각의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을 제공한다. 유아들은 또래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유익한 시간을 나누며, 공유한다. 이 모든 능력들은 신체적인 활동의 연습을 통하여 이뤄지며 이것은 유아의 노력에 방향을 두고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들이다.²³⁾ 이러한 경험들은 유아들의 느낌, 감정과 인상, 반응을 소통하고, 표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1) 몸의 위치를 바꾸기, 균형잡기, 물체를 다루기, 물체를 던지고 받기 등 유아들의 놀이는 맨 처음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고, 교사는 유아들이 움직이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기쁨을 느끼면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22) 이동(걷기, 달리기, 높이, 멀리뛰기), 균형(한 발로 균형잡기), 실험, 실습(손에 쥐기, 당기기, 밀기), 물체 던지기, 물체받기 등

23) “가능한 더 멀리 뛰기”(체조 활동)는 “뿔뜰에서 뛰어 두발로 착지”(체조 활동)와 다르다.

제 5 장 초등학교교육

초등학교는 1992년 1월의 법령에 따라 두 개의 cycle, 5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학년을 준비과정 (CP), 2학년과 3학년을 기초과정1 (CE1)과 기초과정2 (CE2), 4학년과 5학년을 중급과정1(CM1)과 중급과정2(CM2)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cycle별로 나누어 보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유치원 대반에서 시작하여 계속되는 과정으로 제2cycle인 기초학습기,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제3cycle인 심화학습기라 할 수 있다.

1. 입 학

(1) 입학연령

의무교육은 6세부터 시작하고 있다.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등록을 6세때 하여야 한다. 어떠한 아동도 교육부 특별위원회의 권고 없이는 6세 전에 초등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없다. 6세 이전의 아동 중에서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입학의 가능성이 있다.

(2) 입학학교

학부모는 아동을 공립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으며, 사립교육기관에 취학시킬 수도 있다. 혹은 가정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다. 가정에서 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부모는 시청과 교육부의 장학관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감독은 교육 수준과 아동의 건강상태에 대해 행해 지고 있다.

공립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에 여러 개의 학교가 있으면 관할 시청에서 학부모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학교를 배정해 주고 있다.

(3) 교육운영

1) 자녀가 유아교육을 이미 받은 경우

유아교육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유아교육을 최종적으로 이수한 지역이나 부모 거주지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에 등록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대체적으로 거주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부서와 협의하여 입학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2) 자녀가 유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청에 관련서류²⁴⁾를 준비하여 문의하여야 한다. 시청에 서류를 접수한 후 지역 초등학교에 해당서류²⁵⁾를 구비해 등록해야 하며, 해당 초등학교장에 의해 등록이 된다. 등록은 매년 4월부터 하고 있으며, 아동이 학교를 바꾸지 않는다면 매년 등록을 새로 갱신할 필요는 없다.

3)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의 학교변경

우선 학부모가 정한 학교의 정원이 초과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시청에 가서 예외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²⁶⁾. 새로 선택한 학교에 등록을 마치고, 이전 학교의 학교장에게 통지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가족수첩, 신분증 또는 호적초본이나 출생증명서 복사본, 주거증명서류, 해당 자녀가 예방접종을 받은 확인 서류

25) 가족수첩, 신분증 혹은 호적초본이나 출생증명서 복사본, 시청에서 교부 받은 입학서류, 가족의료보험에서 해당 자녀의 건강진단서, 법정 의무 예방접종을 받은 확인서류.

26) 승인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4) 자녀가 다른 행정구역에서 유아교육을 받은 경우

자녀를 다른 행정구역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한다면 다른 행정구역에서 초등학교 등록을 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시켜야 한다. 만약 자녀를 현재의 거주지가 있는 행정구역으로 초등학교를 옮기기를 원한다면 해당거주지에서 유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모든 경우에는 이전에 교육을 받은 유아 교육학교의 원장에게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자녀가 다른 학교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원장이 발급해 주는 증명서를 새로운 주거지의 관할 시청에 제출하여 신규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5) 현재의 거주지 이외의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학교입학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필수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학부모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접수처에서는 현 거주지 내에 학교가 없거나 혹은 몇몇의 특별한 상황에 한해서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등록을 한 이후에도 교육청에서는 자녀의 모든 초등교육을 행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

(4) 의무적 예방접종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수적이고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²⁷⁾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BCG접종 항체 테스트에서 음성반응을 보인다면 예방접종²⁸⁾을 다시해야 한다. 단, 천연두와 풍진, 백일해 예방접종은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27) 단 항체가 있을 경우는 제외

28) 디프테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DT-POLIO 접종, 파상풍과 소아마비 예방접종, BCG 접종을 포함하고 있다.

(5) 전학관련

전학을 하고자 하면 사전에 이미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발급해 주는 승인 증명서와 함께, 새 거주지의 관할 시청에 해당 서류²⁹⁾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학교등록과 관련한 서류는 시청에서 교부해 주고 있으며, 학부모는 이 서류를 해당 학교의 학교장에게 접수해 등록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생의 입학울 허가한다.

2. 초등교육 프로그램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주당 평균 26시간으로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다.

(1) 기초적인 견습 기간

초등교육의 초기 수업에 해당하는 견습시간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관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분야	주당 최소 교육시간	주당 최대교육시간
프랑스어	9시간	10시간
단체활동	30분(일주일에 한번 토론)	
수학	5시간	6시간
사회	3시간	3시간 30분
외국어(classe de C.E.1)	1시간 30분	
예술교육	3시간	
체육활동	3시간	

29) 가족수첩, 신분증 또는 호적초본이나 출생증명서 복사본, 주거증명서류, 해당 자녀가 예방접종을 받은 확인 서류

매일하는 교육 ³⁰⁾	최소 시간
읽기와 쓰기(글짓기 또는 모사)	2시간 30분
암산	15분

유아교육 단계부터 교육하기 시작한 기초적인 견습 기간은 초등교육 2년 때까지 계속된다(예비수업과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이 교육은 세심한 글쓰기 실습이라는 노력을 통하여 정확하고 자신있는 글쓰기 기술을 얻게 해준다.

1) 프랑스어 수업

이 과정은 각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읽고, 쓰는데 친숙해지도록 함으로써, 글쓰기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어 말하기는 학교생활과 모든 영역에 걸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말하는 것을 강화하는 훈련을 한다.

2) 단체활동

학생들은 또래들의 다른 관점이나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고려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단체생활의 규율과 강제성을 알게 되고, 스스로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교사의 임의적인 간섭과 개입에 의한 처벌보다는 규율에 따른 처벌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학생들은 폭력을 거부하는 것과 분쟁을 조정하는 것, 제기된 문제를 토론으로 해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30) 읽기와 쓰기(글짓기 또는 모사) 교육의 목적은 매일 2시간 30분씩 연습을 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이러한 학습활동은 다른 교과목 교육활동에 훈련이 되는 활동이다. 이 학습은 한정된 시간분배를 포함한다. 암산은 매일매일 적어도 15분씩 연습하는 것이 목표다.

3) 수 학

Cycle 2 에서는 수의 구조에 대한 학습, 형체, 크기, 측량에 대한 학습으로 진정한 수학의 세계로 입문하는 것을 제안한다. 수에 대한 이해는 특히 숫자쓰기(10진법)와 모든 형식의 암산(결과를 기억하고, 신중하게 계산)이 우선적인 목표이다. Cycle2 에서는 처음으로 연산기술을 습득하고, 덧셈과 뺄셈 학습을 중요하게 다룬다.

4) 사 회

유아교육학교에서는 아동들이 처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에 관해 기초적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는 교육을 한다. 기초적인 견습기간(apprentissages fondamentaux)에서는 좀더 확장된 분야의 상황을 적용해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훈련한다. 교사의 지도아래 학생들은 새로운 상황이나 공간, 혹은 멀리 떨어진 상황 또는 즉각적인 경험에 앞서 확인하는 것을 배운다. 학생들은 다른 시대에 대한 자각과 현 세계와 물질세계의 다른 현상들 나아가 물체나 물질들에 관한 관찰을 주의 깊게 하기 시작하는 훈련을 한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정보를 다루는 기술과 cycle2의 의사소통을 유효하게 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한다.

5) 외국어와 지역어

C.E.1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발견을 하게 하는 외국어 교육을 한다.

6) 예술교육

초등학교 예술교육은 실제적인 구성으로 창조적인 취향과 소질 ·

재능을 개발, 표현하는 것을 발전시킨다. 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인격과 자립성을 성숙하게 하며, 호기심을 발달시키고, 관찰과 인간문화의 발달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7) 체육교육

유아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초 견습기간(au cycle des apprentissages fondamentaux)의 체육교육은 목표³¹⁾를 두고 시행한다. 이러한 것을 통해 체육교육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신체활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2) 깊이 연구하는 기간

분야	교과목	주당최저 학습시간	주당 최대학습시간	주당 과목 학습시간
프랑스어 와 인문학	문학(말하기,읽기,쓰기)	3시간30분	4시간 30분	
	프랑스어(문법)	2시간30분	3시간 30분	
	외국어	1시간30분		
	역사와 지리학	3시간	3시간 30분	
	단체활동(토론)	30분		
과학	수학	5시간	5시간30분	8시간
	과학실험및기술실습	2시간30분	3시간	
예술	음악과 미술	3시간		3시간
	체육	3시간		3시간

31) 능력의 발전과 행동의 동기를 발달시킨다. 신체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술과 스포츠를 표현함으로써 사회성과 문화적인 것에 접근 한다. 유용한 지식과 좋은 태도를 익힘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관해 잘 알게 되고 그것을 보호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매일학습 ³²⁾	최소시간
암 산	15분

읽기와 쓰기 ³³⁾	시 간
프랑스어와 언어 구사력	13시간, 각 분야의 교육이 13시간

깊이 연구하는 기간(Cycle des approfondissements)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의 바탕이 되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³⁴⁾.

1) 프랑스어와 인문학

① 문 학

cycle3 의 교육은 각 학생들에게 자기의 연령 수준에 맞는 참고목록을 제공하고 청소년기 문학교육을 한다.

② 언어교육(문법)

초등학교에서는 프랑스어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법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는 쓰기와 복잡한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언어에 관한 호기심을 증대시키고, 묘사하고 서술하는 과정을 통해 진단하고, 언어의 체계성을 분석하는 정신을 발달시키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다.

32) 암산은 매일 15분씩 훈련을 해야 하는 것에 학습 목표가 있다.

33) 읽기와 쓰기(글짓기 또는 모사) 교육의 목적은 매일 2시간 30분씩 연습을 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이러한 학습활동은 다른 교과목 교육활동에 훈련이 되는 활동이다; 이 학습은 한정된 시간분배를 포함한다.

34) 프랑스어 능력, 문화교육, 수학, 예술교육과 체육교육.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이 심리학적인 발달과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효과의 개인차가 있다. 따라서 보다 더 신중한 방법으로 지식을 전달해야 하고, 보다 더 입증된 지능적인 도구와 기구들을 활용한다.

③ 외국어 교육

4년 동안의 실습을 통해 초등교육에서의 외국어는 A1과 A2 수준 정도의 수준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는 학생들이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해당한다. 이 두 단계는 기초적인 외국어의 능력과 지식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은 A1단계의 외국어 실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둔다.

④ 역 사

14단계의 6기간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중요한 역사적인 시대를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고 연대별로 큰 사건을 표시해 암기하는 교육을 한다. 이것은 각각의 특징적인 시대를 알고 역사의 결정적인 중요한 단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은 프랑스 역사의 큰 사건들을 이해시키고 연관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⑤ 지리학

프랑스와 유럽 그리고 세계의 지리적인 영토에 관해 교육을 집중시킨다. 학생들은 현재 살고 있는 영토와 다른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에 관해 이해를 하고, 각 국가의 이름을 알게 된다. 이것은 그들의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게 하고 있으며, 교육은 지도책자와 지형학 카드와 지리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테마별로 혹은 종합적으로 이러한 교재와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다.

2)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

시민교육은 우선적으로 지식을 얻는 교육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천 및 행동에 관한 견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Cycle 3에서

시민교육은 각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서 단체활동에 더 잘 동화되고, 개인의 성격특성과 독립심을 확인하도록 이뤄진다. 시민교육은 초등학교 학생의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개인의 자유와 서로 다른 가치관, 집단의 구속력 사이에서 명확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은 자각과 성찰의 배움은 다른 공동체생활³⁵⁾에서 확장되도록 하고 있다

3) 과학교육

① 수 학

Cycle 3에서의 수학교육은 이성적인 사고력을 발달시키고, 시민의 형태와 중등과정에서의 교육을 더 잘 이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학습하게 되는 모든 개념과 지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주력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³⁶⁾

② 실험에 근거한 과학교육과 기술

과학과 기술에 대한 교육은 관찰을 통한 학습으로 물질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과 과학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중요한 역할분담을 통해 자유로운 놀이로 물체에 대한 기술에 접근하도록 이끈다.

4) 예술교육

예술교육활동은 창의력과 표현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자율성의 발달과 학생의 인격을 향상 시킨다. 그리고, 감수성과 지능을 다

35) 지역사회, 국가, 유럽, 세계

36) 10진법에서의 정수, 정수영역에서 사칙연산, 분수, 물체의 속성 및 크기측정, 공간의 개념을 주된 학습목표로 삼는다.

양한 형태로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예술교육은 보충적인 교육으로 이뤄진다.³⁷⁾

5) 체육교육과 신체활동

체육교육은 cycle3의 교육이다.³⁸⁾

- ① Cycle 1 : cycle des apprentissages premiers(petite et moyenne section de maternelle)
- ② Cycle 2 : cycle des apprentissages fondamentaux(grande section de maternelle, CP et CE1)
- ③ Cycle 3 : cycle des approfondissements(CE2,CM1,CM2)

3. 초등학교 생활

(1) 학교생활과 건강

1) 법정 예방접종

유아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도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³⁹⁾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질병들도 예방접종하기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⁴⁰⁾

37) 예술교육의 세가지 보충적 교육에는 ① 시각적인 예술교육과 음악을 통한 교육(예술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② 다른 교육과 통합하는 예술활동(감수성을 강화하고 심미적인 규모를 확대한다 : 문학과 연계시킨 연극활동, 스포츠와 연계시킨 무용 등) ③ 문화와 예술교육을 접목시킨 교육(예술교육이 더 확장되고 깊어지고,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38) 체육교육의 목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신체적 능력의 발전과 행동의 동기를 발달시킨다. ② 신체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술과 스포츠를 표현함으로써 사회성과 문화적인 것에 접근 한다. ③ 유용한 지식과 좋은 태도를 익힘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관해 잘 알게 되고 그것을 보호 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39) 디프테리아, 과상풍, 소아마비(중증 백일해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결핵 (BCG)

40)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ROR).

2) 건강진단

첫 번째 건강진단은 5세에서 6세 사이에 유아교육기관이나 초등학교 1년에서 행해진다. 이 신체검사에서는 장애나 작은 문제⁴¹⁾들을 체계적으로 조기 진단하고 있으며, 부모 중 한명이 동반해야 한다. 부모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고용주에게 자녀의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소집장을 제출해 양해 및 허가를 구할 수 있다.

이 첫 번째 건강진단 이후에 자녀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3) 진단서

각각의 검사 항목은 교육부의 의료진에 의해 개별 아동별로 “학생 건강기록부”에 기록되어 남겨진다. 이 건강기록부는 비밀문서로 취급된다. 학부모는 교육부의 의료진에게 개별로 요청하여 약속을 잡아 기록부를 볼 수 있으며, 의료진에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4) 학교에서의 응급처치와 치료

지역 공교육기관과 학교에서의 응급처치는 2000년 1월 6일 공식 국가 의정서(Un protocole national sur l'organisation des soins et des urgences)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이 의정서에는 공교육기관과 학교에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의학정보를 담고 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나 장애아동들의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맞는 약물을 처방받거나 혹은 책임자와 필요한 용구나 물품들을 의무실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의정서에 의한 약물 처방은 의무실이나 구조원의 왕진을 통해 얻을 수 있다.

41) 시력, 청력, 언어장애, 발달장애등

공식 국가의정서에는 위급한 경우에 필요한 정확한 지침들이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언제라도 전화로 응급 구조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응급상황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응급서비스센터나 의료원과 협력하여 대비를 하고 있으며, 위급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장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도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는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학생의 가족과 긴밀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학부모가 취학시킨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학생의 인성이 조화롭게 형성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학교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건강에 대한 교육으로 질병의 예방과 건강이 호전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⁴²⁾

4. 초등학교 식당 운영

학교식당에서는 두 가지 까다로운 요건에 부응해야 한다. 즉, 학교 급식 질의 담보, 특히 식품안전에 연관된 질문에 관한 정보를 부모들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음식의 맛에 대한 교육, 영양 섭취, 음식문화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1) 일반원칙

취학아동의 영양섭취는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에 필수적이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영양섭취는 균형 잡히고, 다양하게 하루 중에 만들어진 신선한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 하도록 하고 있다.⁴³⁾ 식사시간은 학생들에게 긴장을 풀고, 또래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42) circulaire n°2003-210 du 1er décembre 2003

43) 하루 총 에너지 중 20%는 아침에, 40%는 점심에, 10%는 4시경에, 30%는 저녁에 공급해야 한다.

(2) 구 성

초등교육의 급식문제는 지방 공공단체의 소관이자 책임 하에 있다. 최소 행정구역의 규모에 따라 공공단체의 조직방식이 달라진다. 급식 서비스의 질은 독자적인 지방공공단체나 학교식당의 서비스에 의해 담보되며, 이 경우 식당협회에 의해 식당 경영이 이뤄진다. 음식은 중앙 급식소에서 만들어지며 지역 급식소(satellite)에 배달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유지되게 한다.

(3) 필수 권장 영양분에 바탕을 둔 음식 메뉴

음식의 식단은 영양소의 균형적인 섭취를 반영하여 주요 원칙⁴⁴⁾에 따라 짜여지게 하고 있다.

(4) 몇 가지 충고와 권고

간식서비스는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와 같은 불충분하고 결핍된 영양섭취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하루 영양 섭취량에 필요한 칼로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된다.⁴⁵⁾ 전문적인 식이요법과 영양학의 참고와 협의로 이뤄지며 특히, 위생과 안전에 대한 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⁴⁶⁾

44) 지방 종류의 감소를 가져오는 식단,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강화하는 식단, 철분을 강화하는 식단, 칼슘을 강화하는 식단 등

45) 아침간식은 늦어도 점식식사 2시간 전에 공급이 되고 최소한도로 치즈나 다른 유제품을 포함해야 한다. 오후에 공급되는 간식일 경우 음료와 곡물성분, 과일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46) 충분한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손으로 세척을 할 경우 올바르게 정확한 방법으로 세척하고 건조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5) 식품의 안전

인간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영양섭취의 권리에 기초해 필수적이다. 이 조건을 확실히 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의 활동들이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 1) 보건의 위생상 위험에 대한 평가와 영양에 관한 그리고 식품 제조 기술에 관한 과학적인 평가
- 2) 규제 및 통제
- 3) 실질적인 안전과 위생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활용
- 4) 공권력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

5. 초등학교 보험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에 대한 보험도 유아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지만 법률상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 방과 후 학교 주변 활동이 점차 다양화됨으로써 더 이상 명확하게 필수적인 정규 교육과 방과 후 임의적 교육 활동을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교 주변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활동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나 소풍·여행 등의 활동에 대비한 보험가입 역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면 학교보험 가입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가입한 학교보험이 자녀로부터 야기된 상해나 위험에도 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업자나 학부모 협회에 문의해 볼 수도 있다. 학부모 협회에서 보험 서류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통제된다.⁴⁷⁾

6. 특별 제도

(1)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과 장애아동

2005년 2월 11일부터 장애아동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교육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장애우들을 위한 평등권, 기회균등, 참정권 그리고 시민권의 신장을 위한 것이다. 법안들은 장애 학생의 체계적인 교육의 책임과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형태의 교육을 연속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 지역의 각 학교에서는 학교가 속한 지역의 장애학생을 받아들일 의무와 사명이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경우는 유아교육 학교에서나 초등학교에서나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즉, 장애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제정한 2005년 2월 11일 법률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교교육을 보장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평가해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에 따른 장비와 부속물, 보조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⁸⁾. 모든 장애아동은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필요한 장비와 부속물에 대한 평가는 다방면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는 위원회와 자치기구에 의해 행해진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교육은 일상의 보통 평범한 교실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학교교육은 장애아동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교육 장비들을 파악하고 갖추진 상태에서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을 비롯해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전체 수업시간 혹은 부분적인 수업 시간을 통해

47) 유포에 관한 법률은 *une circulation du 29 août 1988(B.O. N° 28 du 01.09.88)*에 명시돼 있다.

48) 치료상 필요 혹은 재교육을 위한 부속물, 학교생활의 보조자 배정, 맞춤형 교육의 설비,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적인 장비들의 지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학교교육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충물은 특별 교육 서비스나 S.E.S.S.A.D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교육 환경이 장애아동에게 구속과 속박을 주는 경우에는 CLIS의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실은 같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로 구성된(최고 12명) 소규모 정원으로 갖춰진 초등교육 교실이라 볼 수 있다.

CLIS는 4가지 분야별로 마련되고 있다.⁴⁹⁾ CLIS는 장애아동들을 개인적으로 평범한 교실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을 검토해 허락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혜택을 누릴 수는 있다. 학교 상황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의 통합이 가능하다.⁵⁰⁾

장애아동이 중요한 치료를 요구하는 모든 상황과 경우에 교육과 치료의 균형을 위해 장애아동에게 학교 의료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결정은 장애아동에게 정확히 필요한 금액과 균형을 고려해 권리를 위한 위원회와 C.D.A.P.H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모든 장애아동은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필요한 장비와 부속물에 대한 평가는 다방면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는 위원회와 C.D.A.P.H 자치기구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를 입학시키기 전, 자녀를 더 나은 교육환경과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학교장에게 자녀에게 필요한 장비와 부속물에 관한 요구를 하고 이에 관해 언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학교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이민 초등생과 전학생

이민 초등생과 전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유아교육학교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프랑스 사회와 초등학교 생활

49) 정신지체(CLIS 1), 청각장애(CLIS 2), 시각장애(CLIS 3), 운동신경장애(CLIS 4)

50) CLIS의 한복판에서 교육에 대한 적응, 학교 공동체의 목적 안에서 예정된 교육 활동에 참가하는 것,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많은 활동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

에 충격없이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인구, 즉 서커스 단원이나 직업적인 이유(벧사공, 행상인서커스 단원 등)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초등교육 정책도 유아교육에서와 동일하며, 그 이유는 이러한 부모들의 자녀들 역시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⁵¹⁾

7. 재정적인 지원

학교입학에 따른 수당(A.R.S)은 매년 학교 입학 전에 3백만 이상의 평범한 가족들에게 지급된다. 수당은 6세부터 18세까지의 5백만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2007년 학교입학을 위해 지급한 allocation 금액의 총합은 학생 한명당 272.57유로에 해당한다. allocation은 6세이상 16세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8월 말부터 CAF에 의해 바로 지급되며, 16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은 주거증명서류나 실습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보다 조금 늦게 지급된다. 2006년 지원한 재정은 아이 한명 당 21,991 유로를, 두 아이를 위해 32,141유로를, 세 아이를 위해서는 5075유로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였다.

8. 학생회

학생회는 공립학교의 연합으로 학교나 교실에서 만들어진 학생들의 단체이다. 학생들과 교육자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⁵²⁾ 학생회의 재정은 단체 활동으로 충당하고 있다.⁵³⁾ 학생회는 Communes에 대체될

51) 엄격한 법적 해석에 의하면 한 가족이 일시적인 방법으로 한 영토에 거주하는 것 일 때에는 교육의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52) 이 조직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들 간의 연대의식을 발달시킨다. ②학교 교육환경과 학교 주변 환경 및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발전시킨다.

53) 출판, 예약구독 등

수 없고, 공동의 교육 시설이나 용품에 투자를 한다. 학생회는 공공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고, 학생회의 재원은 보조금과 회비, 축제의 물건을 생산하는 돈으로 충당한다. 학생회비는 언제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여야 한다. 학생회는 O.C.C.E의 한 부분으로 가입해야 하고, 자치적인 기구로 형성되어야 한다.

9. 상업적 중립의 원칙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는 상업적인 광고는 금지된다. 중립성은 특히 모든 교육분야 에서는 불가피하다. 가족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물건을 소비하는데 경쟁심을 갖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이다. 교과서에 상업적인 광고를 삽입하거나 나타내는 것은 교육적인 활동을 위해 정당화된 행위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상업적인 유인물이나 자료들을 배포하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학용품과 보험업 리스트에 어떤 특정 상표 역시 추천 혹은 권고하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육부분에 관심을 보이는 회사와 실제로 파트너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교육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어떤 기업에 의해 경연대회가 조직되고, 몇몇의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기업들이 제안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10. 초등교육에서의 스포츠와 체육교육

초등교육에서의 체육교육과 스포츠 활동은 유아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직되고 있다. 스포츠 활동으로는 육상경기, 수영, l'orientation, 등반, 라켓을 이용한 경기, 단체 경기, 체육관 경기, 춤, 마임, 서커스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단체경기는 전통적인 것이든 아니든 프로그램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 수영은 매년 평균 최소 12번의 시험을 갖는 인기 종목이다. 매년 장비들을 사용 가능하게 허락한다. 몇 몇의

큰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매년 강화된 연습 및 훈련을 통해 시합이 치러진다. 평균적인 사람과 가능한 기술로 실행되고 있다.⁵⁴⁾ 일주일에 세 시간씩 이러한 스포츠활동에 할애를 한다. 2007년부터 모든 학교는 자율적으로 목표에 맞게 이 주당 시간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스포츠 활동을 연습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A.S.라는 학교스포츠 연합단체가 설립되어 있다.

54) 프랑스에서의 체육교육 프로그램 ① 시간을 측정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 육상 경기, 수영 ②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 orientation, 등반, roule et glisse, 마술, 수상 스포츠 ③ 단체 혹은 개별 활동을 위해 : 씨름, 레슬링, 줄다리기, 라켓으로 하는 운동, 단체 경기(전통적인 것이든 스포츠적인 것이든) ④ 예술과 심미적인 표현을 위한 활동 : 예술체조 및 리듬체조, 서커스, 싱크로나이즈

제 6 장 중등교육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무시험으로 진학하며, 1975년 7월 11일 법령에 의해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 공공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무상교육으로 4년제이며, 1996년까지는 2개의 cycle로 나뉘어지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기간을 중학교 제1기 cycle에 해당하는 관찰기, 3학년과 4학년의 기간을 중학교 제2기 cycle에 해당하는 지도기로 구분하고 있었다. 중학교를 관찰기와 지도기로 분류하여 교육하는 이유는 모든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성있게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장래 진로지도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⁵⁵⁾.

1996년 이후 중학교 과정은 3개의 cycle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 학년 개념으로 6학년⁵⁶⁾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응기, 5학년과 4학년의 기간 동안을 중심기, 3학년의 기간을 지도기로 나누고 있다.

1. 중학교 학사과정

1996년 이래로, 중학교 교육 체계는 적응기(6학년⁵⁷⁾, 중심기(5학년과 4학년⁵⁸⁾, 지도기(3학년⁵⁹⁾ 과정으로 3개의 학사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55) 박동준, 프랑스 교육제도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2집, 2003, pp.388.

56) 프랑스 학생을 학년별로 나타낼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으로 총 12년의 중등교육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학년을 부를 때는 고등학교 3학년은 마지막 해라고 해서 학년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2학년을 프랑스에서는 1학년이라고 부르며,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11학년으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중학교 1학년생을 6학년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57) 초등학교의 기본적인 지식획득을 공고히 하고, 학생들이 중등교육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과 학과를 깨우치게 한다.

58) 학생들이 그들의 지식을 깊게 파고들고 넓히게 한다. 다양화된 교육적 담화들은 거기에서 조직되어질 수 있다.

59) 학생들의 획득을 보충하고, 중학교에 뒤따라 작용하는 일반적인, 기술적인 또는

(1) 적응기 과정(6학년)

6학년은 초등학교와 중등 교육 사이에서의 변화의 해이다. 6학년 학생들의 학사과정과 운영은 2001년 개정 이래로 강화되어졌다. 학교 교육 초기는 국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국가의 평가는 개인적인 교육 평가의 실현을 의미하고,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구성되어진 그룹의 설치, 배치를 의미한다. 교육적으로 성공한 개개의 프로그램은 2002년 1월 14일에 중학교 6학년에 있어서 교육 체계를 정착시키면서 종결되었다.

(2) 중심기 과정(5학년과 4학년)

중심적인 학사과정에 해당하는 중학교 5학년과 4학년 과정은 학생들에게 깊이 파고들고 그들의 지식과 경쟁력을 넓히게 한다. 5학년에서, 학생들은 라틴어의 수련에 첫 발을 내딛게 되고, 4학년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제2 외국어나 지역 언어를 시작한다.

의무교육의 범위 속에서, 학교들은 매주 2시간을 발견의 여정표의 체계를 위해 적어도 2개의 학과를 관련지으면서 배치시킨다. 그것들은 모든 5학년·4학년 학생들을 위해 설치된다. 게다가, 의무교육에서 각각 학생들은 하나 또는 두 개의 자율교육을 따를 수 있다.

중학교, 회사, 또는 전문 고교 사이에서의 교체에 있어서의 부서들은 14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과목의 발견과 직업적인 절충안을 가진 관계에 있어서의 활동 통합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직업적인 교육에 도달하도록 한다. 3학년의 새로운 교육체계는 2005년 개정 이래로 현재 시행중이다.

(3) 지도기 과정(3학년)

학생들의 지식 보충과, 그들 각각의 장래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을 지원하며, 중학교 이후의 교육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중학교 최종과정이다. 2005년 개정 이래로, 지도의 학사 과정의 새로운 교육체계가 현재 적용중에 있다. 새로운 교육체계에 의한 3학년 과정은 이전의 3학년 과정의 다양함을 대체하고 있으며, 자율 교육의 목록을 학생별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3시간의 직업적인 발견의 옵션 또는 직업적 발견의 6시간의 기준이 덧붙여졌다. 2005년 개정 이래로, 3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직업진로를 위하여 최대한도의 기간동안 학교의 조언과 협조를 받게 된다. 그것은 기술적, 경제적, 직업적 환경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있다.

2. 재정상의 원조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경제적인 원조들이 있다.

(1) 개정된 학교 수당

개정된 학교 수당은 6살에서 18살의 나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7년에 학교 수당의 총액은 학생 한명당 272.57 Euro를 지급하였다. 2006년의 프랑스 재원은 학생 한 명당 21991euro, 2명당 27066euro, 3명당 32141euro를 지급하였으며, 학생 1명을 기준으로 지급한 액수에 추가로 학생당 5075euro를 지급한 액수로 볼 수 있다. 개정된 학교 수당은 가족수당금고(allocations caisses familiales)에 의해 직접 지급되고 있다.

(2) 중학 장학금

중학 장학금은 계속되는 장학재단의 설립에 따라 등록된 중학생들의 교육과정이수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중학 장학금은 학생가족의 세금 또는 학생의 법적 대리인의 기능을 하면서 학생가족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⁶⁰⁾ 가족 또는 학생의 법적 대리인에 의해 대신해지는 장학금 요구 신청서는 창립주에 다시 되돌아간다. 이 신청서는 학생, 그 법적 대리인, 소득에 있어서 세금의 통지와 관련된 정보지를 포함한다.

(3) 사회 중학 기금

사회중학기금은 예외적인 것으로 직접적인 지원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또는 자연스러운 공급의 형태⁶¹⁾를 취할 수도 있다.

(4) 간이식당을 위한 사회 기금

이 기금은 불우한 위치에서 태어난 학생들, 즉,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제 2단계의 특성화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설립한 사회기금에 의한 학생 간이식당에서의 식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교장은 학사 기간 동안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준과 형식에 있어서 사회 기금 운용 사무실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3. 기숙 제도

많은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기숙사 환경은 친숙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지만 면학에 항상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는

60) 가족의 재정과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3가지 기준에 따라 책정된 연 총액은 76.62euro, 212.25euro, 331.47euro로 2007년에 개정되었다.

61) 반 연금 비용 또는 기숙학교, 다양한 용품의 형태 등

없다. 그러나, 기숙제도는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사회적 통합과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 결정적인 성공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공의 사회의 기숙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잇따르는 조치⁶²⁾는 단체들에 있어서 행해진다. 이 협정 덕분에 Pinault- Printemps-Redoute 그룹에 의해 창설된 Solidarcité 재휴 중개인에 의해 중학교 학생들의 기숙사제도 계획은 더욱 진일보한 상태에 있다. Pinault-Printemps-Redoute 그룹과 교육부 장관의 협력, 우등교육과 연구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협정은 장학 혜택을 받는 학생과 기숙생 그리고 공로자에 이득이 되는 장학금의 부여를 교육적 우선권의 범위에 있어서 허락한다. 사회 공공 기숙학교제도의 복구 프로그램은 열정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미 취해진 조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 대체적이고 건설적인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다.

4. 중학교의 식당

학교 식당은 초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중의 요구⁶³⁾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맛, 영양, 문화적인 식단에 있어서 교육적인 특권의 장소이기도 하다.

62) La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과 함께한 출판한 “사회 공공의 기숙제도, 다시 새로워진 개념”은 부동산 계획의 대표자를 돕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건설에 참여할 운명이고 사회 공공의 기숙학교를 새로 건설하는 데 참여할 운명인 국가의 예외적인 경제적 참여의 합계는 457만 유로이다. 2001년 개정된 이후로 경제적인 원조, 장학금을 받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1년의 합계는 231euros이며 기숙제도를 받기는 2개의 중등학교, 즉 le collège André Canivez à Douai(Nord) et le collège Alfred Sisley à Moret-Sur-Loing(Seine-et Marne)와 함께 협의의 사인을 허락했던 2001년의 동의 서약에 의해 구현된 Pinault-Printemps-Redoute 그룹과의 파트너쉽.

63) 질 높고 영양가 있는 식사 유지와 안전한 식단에 걸린 질문들에 있어서 부모들에게 더 잘 알리는 것.

(1) 일반원칙

학생들의 나이에 맞는 음식은 그들의 발육과 정신 작용의 발전, 수련의 능력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균형과 다양성 그리고 고른 분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⁶⁴⁾

(2) 조 직

대부분의 중학교는 직접 그 자리에서 준비되고 소비되는 식사 준비를 관리한다. 이 경우에, 관리는 공동의 요식업 단체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식사는 중앙 부엌에서 준비되고 “인공위성” 이라 말해지는 부엌에서 배식되어진다.

(3) 재료의 안전

특정 음식 재료는 식품법을 근거로 하여 그 안전성이 강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① 위생 위험의 과학적 평가나 영양적 물품, 기술적인 식품 ② 규정 ③ 전문가들에 의한 안전한 행위의 자발적 사용 ④ 공공 세력에 의한 결과의 효율적 검증 등 4개의 기준이 활용되고 있다.

(4) 특수식단제도 운용

특히, 식사 다이어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한 식단을 예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개인적인 식사 계획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락 식사(paniers repas)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학생의 도시락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족은 실내 공기 조정, 식사 공급의 책임, 운송수단 등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조사에 의하면 54%의 중학생들은 학생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64) 아침마다 전체 에너지의 20%, 점심에 40%, 4시에 10%, 저녁마다 30%

5. 학생 보험

학생 보험은 필수적이며,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모든 안전에 있어서 확실해 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 부모 연합에 의한 보험 기록의 보급은 규제되고 있으며, 1988년 8월 29일의 교육부 지침에 의해 정착 되어왔다.

6. 중학교의 스포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은 신체적이고 활동적인 교육의 의무적인 지도를 받는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수하는 스포츠 교육의 범위는 통합 운영될 수도 있다. 활동적인 체육활동 수행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학교스포츠단체 (l'association sportive scolaire)가 매개가 되어 각종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에도 학교스포츠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⁶⁵⁾, 학교스포츠단체는 학생들에게 매주 많은 스포츠 연습을 행하고 있다.⁶⁶⁾

7. 중학교에서의 건강

(1) 의무적인 예방접종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법정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의무적이며⁶⁷⁾, 기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강력하게 권고되

65) 젊은이들의 감각의 영역 속에서 그리고 교육적인 의사소통의 동원의 영역 속에서, 교육부는 활동적인 큰 사건들에 대하여 학교스포츠단체의 협력을 받고 있다. 2003년 육상 월드컵의 감각의 행동 속에서, 프랑스에서, Ile de France 지역의 학회의 학생들을 동원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66) 매 학년도마다 수요일 오후 3시간 씩 종목별 연습을 행하고 있다.

67) 디프테리아, 파상풍, 척수 회백질 염(중증 백일해와 관련된), 결핵(B.C.G)

고 있다.⁶⁸⁾ 예방 접종은 의사들과 건강 증진 임무의 간호사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2) 중학교에서의 주의와 위급상황

2000년 1월 6일 중학교와 지역 공공 교육기관에서의 관리와 위급상황의 체계에서의 국가적인 협정이 맺어졌다. 중학교와 지역 공공 교육기관에서의 전문 활동의 조화와 관리 및 위급 상황시 체계의 형식의 명확화를 위해 일반적인 정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위급 상황의 경우에 세분화된 명령은 게시되어진다. 긴급 상황의 서비스와 연결하는 것⁶⁹⁾을 허락하면서 전화선은 영속적으로 연결 가능하게 하고 있다. 모든 기관들은 학생들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까운 병의원 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성교육

성교육은 새로운 교과목을 통하여 행하고 있지 아니하며,⁷⁰⁾ 부모들과 가족들의 책임에 맡기고 있다.

68) 청소년들을 위한 홍역, 볼거리, 풍진 그리고 B형 간염 백신주사

69) 간호사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의사의 의견, 필요시에 전체적인 원조

70) 그것은 모든 학생들과 학교의 삶을 통해 성장 한다.

제 7 장 고등학교교육

프랑스의 고등학교는 3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계열·기술계열·직업계열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일반계열은 3년과정 이수 이후에 일반계 바칼로레아에 응시하는 과정이며, 기술계열은 3년을 마친 후 기술 바칼로레아에 응시하거나 기술자 자격증 (BT)을 취득하는 과정이며, 직업계열은 CAP나 BEP를 취득하여 직업 바칼로레아에 응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71).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과정은 대단히 다양하며 대체로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1) 1학년 일반계 선택 2,3학년 일반계 전공선택 일반계 바칼로레아 응시
- 2) 1학년 기술계 선택 2,3학년 기술계 전공선택 기술계 바칼로레아 응시
- 3) 전문기술 1학년 2,3학년 기술자 자격증과정 기술자 자격증 (BT)
- 4) 직업훈련 1,2년 BEP, CAP 직업 바칼로레아 2,3학년 편입
직업 바칼로레아 응시 (BEP, CAP를 취득하고 BT에 응시하거나 기술계 바칼로레아 응시)
- 5) 직업견습 1,2년 CAP 취득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있으며, 2학년 때에 일반계와 기술계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분야에 대한 선택은 학생들의 의사에 따르지만 적성과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학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71) 광동준, 전계논문, pp.390.

1. 고등학교 입학

(1) 등 록

1) 일반계 고등학교 및 기술계고등학교의 입학조건

중학교 4학년(최종학년) 말에 학생들은 진로상담지도를 받게 되며, 진로상담 지도를 통하여 :

- 학생의 가족이 희망하는 학교를 표명하도록 한다.
- 일반계열을 지원하던 기술계열을 지원하던, 혹은 유급이던 간에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 학생의 전공 선택이나 선택과목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만약 교사가 제안한 진로방향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학교장은 학부모와 학생을 접견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고등학교 입학시 학교배정에 이의가 있으면 3일내에 교육위원회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자녀의 학생기록부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거절한 진로방향 대신 유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주의사항 : 두 번째 진로결정수업(classe de seconde de détermination) 혹은 두 번째 직업시간(seconde professionnelle), 1학년 중학교육전기수료증(B.E.P)과정, 또는 1학년의 직업적성 증서(C.A.P)과정과 같은 수업에 대하여는 중학교 수료증이나 졸업증서와 같은 증서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입학이 결정된다. 일반고교입학과 직업고등학교의 입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한다.

- 몇몇 혼하지 않는 분야의 적성테스트의 결과
- 관련 고등학교 입학담당기관의 여석 보고를 가지고, 관할지방의 교육위원회 또는 대학구에서 학교배정을 결정한다.

* 직업적성 증서(C.A.P)과정 혹은 중학교전기수료증(B.E.P)과정 이후 직업적성 증서(C.A.P)와 좋은 학교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2년간의 직업계 바깥로레아 준비과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학교전기수료증(B.E.P)를 가진 학생이라면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 2년간의 직업계 바깥로레아 준비과정을 공부하는 1학년으로 입학 가능
- 2년간의 기술계 바깥로레아 준비과정을 공부하는 1학년으로 입학 가능

주의사항 : 이 모든 경우 학생들은 알맞은 진로결정과 해당 고등학교의 여석이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입학이 가능하다.

2) 사립 및 공립학교의 운영

학생이 교육기관과 협약에 따라 사립교육기관에 취학하였다면, 해당 학생의 상급학교나 유급에 관한 진학은 정확한 학생기록부를 공립교육기관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만약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지 않고, 사립교육기관에 취학을 하였다면 해당 학생은 검정시험을 통과하여야만 진학할 수 있다.

3) 유급생의 재등록

유급학생의 재등록은 해당 교육기관의 교장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유급은 학생이 체적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록 하고 있다.

마지막 학기에 바깥로레아시험에 실패한 학생은 해당 학교 입학처에서 허락하는 경우에는 같은 교육기관에 재등록 하는 것을 허가한다. 반면에 삼수를 하는 학생의 경우는 질병이나 가족관계와 같은 특별한 사유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4) 거주지가 바뀐 경우의 등록

학생이 교육기관을 바꾸고자 한다면 현재 살고 있는 해당지역의 교육부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기관에 자녀를 등록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기관이나 유급처리를 담당하는 학교측의 충고 및 조언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2. 고등교육과정

(1) 직업계열

직업교육의 목적은 기업과 해당 분야의 직업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 직업 분야의 노하우와 지식을 획득하고 전수하기 위함이다. 직업교육은 직업교육계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마지막 학년 수업 이후 2년 동안 직업적성 증서(C.A.P) 또는 중학교육전기면허증(B.E.P)을 준비하는 동안 이루어진다. 직업적성 증서(C.A.P)혹은 중학교육전기면허증(B.E.P)을 취득한 이후에 학생들은 63개의 전공이 있는 직업계 바깥로레아를 2년 동안 준비할 수 있다.

직업적성 증서(C.A.P)는 취업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학교육전기면허증(B.E.P)은 직업계 바깥로레아 혹은 기술계 바깥로레아 (via une 1e d'adaptation)를 준비하는 발판이 된다. 직업계 바깥로레아는 고등기술 분야의 학문과 연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 목

표는 취업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직업교육의 학위는 실습교육센터(C.F.A)에서 하는 견습 및 실습교육의 과정을 통해서도 준비할 수 있다.

① 직업교육의 구성

직업적성증서(C.A.P)와 중학교육전기수료증(B.E.P)은 중학교 마지막 학년 수업 이후에 2년 동안 준비를 한다. 직업적성증서(C.A.P)는 일반적으로 취업현장에서 취업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명서에 해당하며, 분명하고 정확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는 특별학위라 할 수 있다. 중학교육전기수료증(B.E.P)을 취득하면 보다 더 폭넓은 자격이 부여되어지며, 이것은 직업 전 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문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며, 특히 직업계 바칼로레아 쪽으로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중학교육전기수료증(B.E.P)을 공부한 학생의 41%는 직업계 바칼로레아 준비를 위해 진로를 정하고, 직업적성증서(C.P.A)과정을 공부하는 2학년 학생의 9%가 직업계 바칼로레아를 준비한다.

② 직업적성 증서(C.A.P)취득을 위한 준비교육

직업교육고등학교 또는 농업직업적성을 위한 증서(C.A.P.A)를 교육하는 농업전문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마지막 학년 수업 이후에 2년 동안 직업적성 증서(C.A.P)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행하고 있다.(y compris après une 3e d'insertion et une 3e SEGPA).

대략 215개의 전공들이 있으며, 프로그램은 이론수업과 실험실 혹은 각 전공에 따른 작업장 및 실습실에서 하는 실기 및 실습수업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교육과 기술교육 그리고 직업교육은 서로 보완되고, 균형적으로 구성이 되도록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전문적인 직업 교

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12주에서 16주 동안은 기업에서 의무적인 실습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③ 중학교육전기수료증(B.E.P)

중학교 마지막 학년 수업 이후에 중학교육전기수료(B.E.P) 교육은 2년 동안 (seconde professionnelle puis terminale B.E.P) 직업교육고등학교나 농업연구면허(B.E.P.A)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는 농업연구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다.

약 50개의 전공이 있으며, 같은 직업분야나 특수 전공의 특별 직업분야와 같은 다양한 B.E.P. 내에서 기술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일반(프랑스어, 수학, 역사·지리, 외국어,etc)교육은 공통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3주에서 8주 동안은 의무적으로 기업에서 체험실습을 해야 하는 것 역시 공통된 부분이다.

④ 직업계 바칼로레아 준비

직업계 바칼로레아를 위한 준비과정은 2년 동안(première bac professionnel, terminale bac professionnel) 진행된다. 직업계 바칼로레아 준비 과정은 아뜰리에 또는 교실 실습,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숙련된 전문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 형태의 성격은 평균 18주 동안의 기업현장실습으로 확인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경험은 학생들이 사회의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미래의 전문가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교과목은 예술분야와 기술분야의 교육도 이뤄지고, 일반적인 교과목도 소홀함이 없이 교육이 이뤄진다 : 학생들은 프랑스어, 수학, 역사·지리, 현용어(langue vivante), 체육교육, 예술교육, 시민교육, 법률과 사회 등의 교육도 받고 있다.

(2) 일반계열

일반계열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일반계열 바칼로레아를 준비하는 것과 대부분의 대학시험합격자들의 오랜기간 학문탐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1992년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 과정 (classes de première et de terminale)에서는 3개의 일반계열 바칼로레아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

- 문학계열(L), 선택전공 : 고전문학, 문학과 언어학, 예술과 문학, 수학과 문학
- 경제·사회계열(E.S), 선택전공 : 경제과학과 사회과학, 수학, 현용어(langue vivante)
- 과학계열(S), 선택전공 : 수학, 물리-화학, 인문학, 기술과학, 생명공학.

① 교육구성

일반계열과 기술계열의 학습구성은 두개의 cycle로 나뉘어진다.

② 진로 결정의 시기

진로 결정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 일반계열과 기술계열의 수업과 연계된다. 그 수업은 학생들에게 기술계열 혹은 일반계열 중에 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원한다. 학생들이 그 계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부터 시작된다.

고등학교 1학년 일반계열 수업이나 기술계열 수업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수업에서 그들의 적성이나 기호, 취향을 고루 반영하고, 테스트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들에

게 공통적으로 두 가지 계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임의의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진로를 결정하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지만, 처음에 한번 결정한 선택을 확정적인 것으로 보지는 아니한다.

③ 최종기(Le cycle terminal)

최종기는 일반계열에서의 고등학교 2학년 수업과 고등학교 3학년 수업에 해당된다. 최종기는 일반계열 바칼로레아를 취득함으로써 마치게 된다.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면 학생들은 3종류 계열인 경제사회계열(E.S.), 문학계열(L), 자연계열(S)의 바칼로레아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간다. 모든 계열의 교육에서는 미래 대학교육에서의 방향을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등학교 2학년 수업에서는 선택과목을 고등학교 3학년 수업에서는 전공과목 교육을 제공한다.

(3) 기술계열

일반계열과 기술계열 2학년과 3학년에서 말에 학생들은 기술계열을 선택할 수 있다. (première et terminale, dans un lycée d'enseignement général et technologique). 기술계열에서는 학생들이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기술학교(S.T.S., I.U.T., école spécialisée, etc)로의 진학을 준비한다. 기술계열 교육은 기술분야의 새로운 물체·물질을 발견하도록 하고, 일반계열과 기술계열 간의 균형 잡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술계열은 아래와 같은 8개 분야의 기술계열 바칼로레아로 인도한다 :

- 과학과 산업기술(S.T.I.)
- 과학과 기술경영(S.T.G.)

- 과학과 사회·안전기술(S.T.2.S.)
- 과학과 실험실연구기술(S.T.L.)
- 음악과 무용 기술(T.M.D.)
- 호텔 및 레스토랑경영
- 과학과 농업생산품기술(S.T.P.A.)
- 과학과 농업 및 환경기술(S.T.A.E.)

마지막 두개의 계열은 2006년 첫 수업을 시작으로 2007년 마지막 수업까지 과학과 살아있는 농업기술(S.T.A.V.)로 대체되었다.

① 교육구성

학업의 구성은 일반계열과 기술계열 모두 두개의 시기(cycle)로 나누어지고 있다.

② 진로 결정의 시기

진로 결정 시기는 일반계열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학생들이 일반계열이나 기술계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부터 시작된다. 고등학교 1학년 일반계열 수업이나 기술계열 수업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수업에서 그들의 적성이나 기호, 취향을 고루 반영하고, 테스트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두 가지 계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임의의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진로를 결정하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지만, 처음에 한번 결정한 선택을 확정적인 것으로 보지는 아니한다.

③ 최종기(le cycle terminal)

최종기는 기술계열 내에서의 고등학교 2학년 수업과 고등학교 3학년

수업에 해당된다. 최종기는 기술계열 바칼로레아를 취득함으로써 마치게 된다..

바칼로레아 선택은 고등학교 1학년 수업부터 시작하고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고등학교 2학년 수업부터 분명해진다. 2007년부터 기술계열은 개혁을 추진하여 ‘sciences médicosociales(S.M.S)’는 ‘sciences et technologies de la santé et du social(ST2S)’로 변경하였다.

3. 수료증과 증명서

(1) 바칼로레아(대학입학 자격시험)

바칼로레아는 1808년도에 생겼으며 대학입학자격시험의 수료증(학위)은 중등교육의 종결을 승인하고 고등교육으로의 접근을 여는 이중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프랑스 교육시스템의 수료증이다. 바칼로레아는 고등학교에서의 공부의 3가지 방향과 일치하게 세가지 타입이 있다.⁷²⁾ 세가지 유형의 바칼로레아는 각각의 바칼로레아 안에서 또 분류되어 지고 있다.⁷³⁾

2006년 639,810 명의 지원자들이 바칼로레아에 응시하여 524,000명 합격하여 응시생 대비 82.1%가 수료증을 획득하였다. 100명의 대학입학 자격 취득자들 중 54명이 일반분야 바칼로레아, 27명이 기술분야, 19명이 전문분야의 바칼로레아의 수료의 비율로 바칼로레아를 획득한 셈이다.

72) 일반 바칼로레아, 기술분야로의 바칼로레아, 전문적인 바칼로레아

73) 예를 들어 일반 바칼로레아를 위한 ES (사회경제 분야), 기술분야로의 바칼로레아를 위한 S.T.I(산업 기술 과학) 등

(2) 바칼로레아 시험과목

바칼로레아 국가 시험은 작문과 구술시험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9~10가지 의무적인 시험으로 되어 있다

(3) 정보와 인터넷의 수료증<B2i>

정보와 인터넷의 수료증인 B2i를 발급하는 목적은 멀티 미디어와 인터넷 도구에 대한 학생의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2005 - 2006학년도의 고등학교 B2i의 증명서는 희망한 고등학교 (일반계열 고등학교, 기술분야, 전문 고등학교)에 의해서 발급되었으며, 2006년 새학기의 고등학교 B2i의 활동은 바칼로레아를 예상하여 조직화 될것이다.

(4) 전문적인 연구의 수료증[B.E.P]

전문적인 연구의 수료증[B.E.P]는 활동적인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거나, 연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수료증이다. B.E.P는 자격이 있는 지원자 또는 노동자의 자격을 주는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B.E.P는 전문 고등학교 3학년 후의 2년 동안 준비한다.

B.E.P의 능력 분야는 C.A.P의 분야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B.E.P의 수료증은 연구에 대한 탐구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분야 또는 기술분야의 바칼로레아 방향으로 약 50% 정도의 B.E.P 수료자들이 진출하고 있다.

(5) 전문 능력의 증명서(C.A.P)

전문능력의 증명서(C.A.P)는 정해진 직업에 대한 자격이 있는 지원자 또는 노동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문 고등학교에서 C.A.P

는 3학년 후의 2년을 준비하거나 전문적인 연구(B.E.P)의 첫번째 자격증 후 일년동안 준비하거나 또는 첫번째 C.A.P를 준비한다. 그것은 역시 지원자들의 길과 또는 경험 에 대한 지식의 법적 유효성의 인정(교육법 L.335-5 조)에 의해서 준비할 수 있다.

거기엔 C.A.P에 대한 약 215명의 전문가들이 있다. 산업 분야 안에서, 서비스와 상업분야 안에서. 수료증들은 활동적인 삶안에서 자주 관여 되어 진다. 그것들은 역시 그들의 연구를 계속 할수 있다 : C.A.P는 예를 들어 보충 평점(MC)또는 지역과 관계된 보충하는 형식(F.C.I.L)에 의해서 완성할수 있다. 1년 동안의 형식들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의 구성요소 들이다.

(6) 기술자의 수료증(B.T.)

기술전문가 수료증은 고등학교에서의 3학년 후 연구에 대한 3년 동안 준비되어 진다(농업 기술 수료증을 위한 농업 고등학교). 그것은 매우 명확한 전문적인 분야 에 대한 능력을 입증하는 수료증이다. B.T. 는 전문사회에서의 추가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으며, 보다 고차적인 전문가와 같은 상위 기술전문가의 수료증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4. 고등학교에서의 건강

(1) 예방접종의 의무화

학교의 교우관계를 위해서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다. 예방접종은 관계 의료기관의 건강증진 임무를 가지는 간호사와 의사에 의해서 행해진다.

(2) 검진

건강검진과 합법적인 의학적 검사는 장애를 가진 학생과 만성적인 질병에 걸린 학생들이나 위험한 기계 또는 유독성의 제품과 함께 일하는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각각 건강 검진에 대한 이해는 “학생의 건강 서류”에 의사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3) 진료와 고등학교에서의 긴급사항

진료조직, 학교에서의 긴급사항들 그리고 공공의 지역 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상세 기록은 2000년 1월 6일날 발표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와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다.

(4) 추가적 행동 예방

2005 학년도부터 학내 모든 시설의 장은 알코올 중독 증세와 담배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제정된 Evin 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시설 안에서 Evin법의 성공 방향에 대한 지침은 교육부 장관과 환각제와 마약중독 퇴치를 위한 각 기관의 장애 의해서 학내 시설의 장애에 보내지고 있다.

5. 특별한 요구 사항

(1)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

국가 교육 기관에 의해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고려한 활동은 법과 참가와 장애인의 시민권의 기회 평등을 위한 2005년 2월 11일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새로 도착한 학생들

고등학교는 프랑스 사회에 새로이 도착한 학생들의 사회, 문화적인 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우선, 프랑스 언어에 대한 숙련과 관련된 그들의 성취가 프랑스 사회에서의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고등 학교와 국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언어 구사에 대한 상황에서 언어에 대한 접근은 그 자신의 장애가 아니며 또한 어려움이 아니라 할 수 있다..

6. 재정적인 지원

고등학생을 위한 재정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지원이 있다.

(1) 입학금 지원

입학금 지원은 6세부터 18세까지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7년도에 학교지원금 총액은 학생 1인당 272.57 유로였다. 한 자녀를 위한 지원 금액은 21,991유로이고, 두 자녀를 위한 지원금은 27,066 유로이고, 세 자녀를 위한 금액은 32,141유로이다 (한 자녀당 추가비용은 5075유로이다).

입학금 지원은 가족수당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2) 고등학교 장학금

고등학교 장학금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지역교육기관(EREA)의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장학금은 가족 중 납세자와 장학금 재정의 변화에 따라 3회에서 10회 단위로 지급된다. 2007년에 1회 지급액은

41.52유로였으며, 3회에 걸쳐 지급되었다.

특별지급 장학금 또는 추가 장려금은 교육단계별로 제공되고 있다.

- 매학년 진급시 추가 장려금 지급 : 1학년 진학, 혹은 2학년과 3학년 진급시 매 학기 초 1회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217.06 유로이며, 유급학생은 해당사항이 없다.
- 비품 및 장비 구입비 지원 : 기술자격증이나 기술계 바칼로레아 준비생, C.A.P나 B.E.P를 준비하는 진공 학생들의 경우 1학년 첫 번째 학기 때 341.71 유로를 지급한다.
- 자격증 취득 지원금 : 다음과 같은 학생들에게 435.84 유로를 3회에 걸쳐 지급한다.
 - C.A.P 또는 B.E.P를 2년 동안 준비하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
 - 중학교 2학년 학기 이후에 3년과정인 C.A.P.에 등록한 중학교 최종학년 학생
 - 중학교 최종학년 학기 이후에 C.A.P를 준비하는 학생
 - 좋은성적 및 성과가 높은 학생들 또는 연수를 통해 추가적으로 수료증이나, 면허·학위를 취득한 학생
- 기숙사 지원금 : 이 장학금은 국립기숙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된다. 기숙사 지원금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1년에 총 234.93 유로를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학생들의 가족들은 추가적으로 특별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 지원금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다른 장학금과 같은 경영 규칙으로 지원된다. 기숙사 지원금은 기숙사비의 일정부분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다.

(3) 공로자를 위한 장학금

이 기금은 장학금을 받는 고등학생 중 재능이 있거나, 공로를 세운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장학금이다. 이 기금은 학생들의 고등학교 재학 내내 바칼로레아 시험 때까지 적용되고, 그들의 학문 탐구를 돕기 위한 것이다.

2006년부터 이 장학금은 장학금을 받는 고등학생 중 국가학위면허 시험(diplôme national du brevet) 에서 우수(Bien) 혹은 최우수(Très bien)의 성적을 얻은 학생에게 지급되고 있다 (2006년 6월 22일부터 시행령 n°2006-730 의 적용에 의해).

재능이 있거나 공로를 세우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이 추가 장학금은 1년에 3번씩 지급하는 고등학교 장학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8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 교육 적응 지원금 (Les bourses d'enseignement d'adaptation)

이 지원금은 학부모들에 의한 재원마련을 조건으로 교육기관을 감독하는 장학사들에 의해 지급된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교교육을 받는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장학 기금액은 2회에서 6회로 분할되어 지급되고 있다. 2007년 연간 고정된 1회분 지급액은 26.64유로이며 3회에 걸쳐 지급되었다.

(4) 사회 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은 국립고등학교에서 학비와 생계비 지출 어려움에 직면한 예외적인 학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이 지원은 학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구성원들 및 학생대표와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

(5) 학교식당을 위한 사회 복지 기금

이 기금은 중학생, 고등학생, 두 번째 단계의 특수교육기관학생들이 속한 교육기관 내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불리한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학교장은 학기 중에 행정부의 조언에 의거한 판단기준과 양식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기금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학생들에게 대단히 유용하며,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사무국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7. 고등 체육교육

국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의 체육교육(E.P.S)은 학생들의 학교 재학기간 내내 매주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미 청소년들의 감각기관을 예민하게 하기위한 분야와 큰 스포츠 행사 개최를 위해 교육 기관들이 소집 및 동원된 경험들을 갖고 있다.

8. 학교 보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보험도 유아교육 이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지만 법률상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 방과 후 학교 주변 활동이 점차 다양화됨으로써 더 이상 명확하게 필수적인 정규 교육과 방과 후 임의적 교육 활동을 구분하기 어렵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교 주변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활동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나 소풍·여행 등의 활동에 대비한 보험가입 역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면 학교보험 가입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가입한 학교보험이 자녀로부터 야기된 손해나 위험에도 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업자나 학부모 협회에 문의해 볼 수도 있다. 학부모 협회에서 보험 서류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제 8 장 대학교육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단기과정과 장기과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단기과정은 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기술전문과정 (STS)과 기술전문대학과정 (IUT)이 있으며, 장기과정으로는 그랑제꼴과 일반대학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단기과정과 장기과정과는 별도로 전문코스 과정으로 진료보조분야와 조산학교 등이 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가장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공교육은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육 과정에서는 이중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일반대학과 그랑제꼴제도라 할 수 있다. 일반대학이 성별과 나이에 제한없이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사람에게 모두 열려져 있는 과정이라면, 그랑제꼴은 바칼로레아를 통과하고 2-3년간 그랑제꼴 준비반의 과정을 거쳐야 합격할 수 있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폐쇄적인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⁷⁴⁾

프랑스 고등교육의 대표적인 유형인 장기과정의 그랑제꼴과 일반종합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그랑제꼴

프랑스의 대학교육과정 중 실무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볼 수 있는 그랑제꼴은 프랑스의 특유한 교육제도로써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일반대학이 개방적이고 교양을 갖춘 고등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본다면, 그랑제꼴은 폐쇄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전문 직업인을 길러내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랑제꼴 준비반의

74) 박동준, 프랑스 교육제도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2집, 2003, pp.382

학생들이 그랑제꼴 입학 시험에 응시하고 명문 그랑제꼴의 합격 여부, 합격생의 수에 따라 그랑제꼴 준비반의 서열이 매겨진다고 할 수 있다.⁷⁵⁾

그랑제꼴의 교육기간은 학교마다 상이하며, 보통 1-2년의 준비반 과정을 거쳐 3년 이상을 공부하고 있다. 보통 일년 단위 학기에 약 67,500명의 학생들이 바칼로레아를 마치고 그랑제꼴 준비반에 진학한다. 그랑제꼴은 전문 분야별로 몇가지 구분이 가능한데, 300여개 이상의 학교들이 있다. 고등사범학교, 문학교 그랑제꼴, 사법과 행정계 그랑제꼴 (ENA, IRA, IEP, 사법관 학교, 국립경찰학교....), 170 여개의 엔지니어 그랑제꼴 (폴리테크닉, 토목학교, 탄광학교....), 100 여개의 상경계 그랑제꼴 (HEC, ESSEC, ESCP....), 농업 및 식품산업 그랑제꼴, 사관학교, 보자르와 국립장식학교, 건축학교 등이 있다⁷⁶⁾.

일반대학이 교육부의 대학국에 소속되어 있는데 비해 그랑제꼴은 공립, 법인체, 사립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2/3가 공립으로 여러 행정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법인체 학교들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 소속으로 상업과 경영분야 그랑제꼴이라 할 수 있다. 사립의 경우는 설립동기가 각 그랑제꼴마다 모두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2. 일반종합대학

일반종합대학은 프랑스 각 도별로 1-2개가 있으며 바칼로레아 합격자들이 등록할 수 있다. 어떤 대학이든 등록과 입학이 자유스럽지만, 선등록제나 단과대학별 신입생 선발 시험 등의 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종전 일반종합대학의 교육과정을 3개의 cycle로 분류하여 학사과정 1-2학년까지를 제1기, 학사과정 3학년과 석사까지를 제2기, 박사과정

75) 광동준, 상계논문 p.396.

76) 상계논문. p.396 ; 고등사범학교, 고문서학교, 사관학교, 엔지니어학교, 상업과 경영분야의 그랑제꼴, IEP 등의 그랑제꼴에 대하여는 상계논문 pp. 396-397 참조.

이후를 제3기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2004-2005학년도부터 고등교육제도를 개혁하여 종전의 3주기교육제도를 LMD교육제도로 전환하였다.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재정적 보조를 받고 있으며, 수입이 적은 가정의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박사과정 재학생들은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는 싼 이자와 다양한 상환 방법으로 학생 대출을 해주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식당과 기숙사를 관리하는 CROUS는 아르바이트와 교양활동, 사회봉사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⁷⁷⁾.

일반종합대학은 전공별로 교육과정이 대단히 상이하며,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공 내용 전반을 살펴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예시적으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대학의 법학교육⁷⁸⁾

(1) 법학교육의 변화

법학교육의 전통에 관한 한 프랑스는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법학교육을 통하여 프랑스는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와 세계질서의 유지와 창조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프랑스 법학교육에 대한 실상은 다소 내실없는 교육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이 2004년 1월 5일 보고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의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의 법학교육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이나 교양을 습득할 수 없고 법적인 소양도 충분히 갖출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실무

77) 상계논문, p.399.

78) 이 부분은 2004년 법률가 대회에서 발표한 ‘프랑스 법학교육의 쟁점과 전망’을 일부 보완한 것임.

교육의 부재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프랑스의 법학교육에 대하여 외견적으로만 고찰한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프랑스 법학교육의 내면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법학교육의 중심을 5년차에 두고 있으며 5년차에서 연구과정과 직업과정을 대별하여 세분화된 전문교육과 실무교육을 행하고 있고, 3년차까지는 법학일반교육에 비중을 두지만 4년차부터는 세분화된 전문영역별 전공교육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4년차까지의 교육에서도 기본교과목 들에 대하여는 이론강의 뿐만아니라 이를 보충하는 연습강좌가 동일 학기내에 동시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프랑스 법학교육은 매 학년별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이 선명하며 내실있는 강한교육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2004-2005학년도부터 고등교육제도를 개혁하여 종전의 3주기교육제도를 LMD교육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이에따라 법학교육도 LMD제도를 도입하였다. LMD제도는 유럽연합의 각국가와 미국의 교육제도 등을 종합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의 고등교육제도를 표준화하고자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종전 2년을 1주기단위로 하여 고등교육을 3주기로 운용하여 왔던 프랑스로서는 매학기별 30학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LMD제도와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제도의 큰 범위가 3주기 교육제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제도의 맥락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3주기 교육제도는 제2주기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법학에 대한 기초교과목과 관련 인접교과목을 2년동안 개괄적으로 교육하는 제1주기교육과, 전공영역을 구체화하여 세부적인 전공지식을 습득하는 2년과정의 2주기교육, 제2주기 이후 결정되어진 전공영역에 대하여 1년간보다 심화된 교육을 이수하게 한후 최소한 2년이상의 기간동안 박사학위 논문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박사학위 취득과 함께 3주기가 종료하도록 하는 프랑스 특유의 교육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하

여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추진한 LMD제도는 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의 학위등급에 따른 교육제도로써 기간의 측면에서 보면 6학기(3년)-4학기(2년)-6학기(3년)를 이수하여야 하므로 3주기 교육제도보다는 고등교육기간이 1년 더 늘어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종전에도 법학사를 위한 기간이 3년, 논문등록 이전까지가 2년, 논문준비기간은 최소한 2년 이상이면 가능하였으나 실제로는 3년 또는 그이상의 기간을 요구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3년-2년-3년의 과정을 요구한 LMD제도는 3주기교육제도의 틀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교육제도는 LMD제도로 변화하였으나, 법학교육의 내용이 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동요없이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법학교육은 Licence 과정까지는 법학일반교육과 외국어교육, Master 과정에서는 전공영역의 세분화와 전문화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특별히 논문과정으로 진학하지 않는한 법과대학 차원에서의 법학교육은 Master 과정에서 일단락된다고 할 것이다.

(2) 법학기초학문으로 법학교육의 출발

법학은 인간관계의 신뢰와 국가·사회의 안정·발전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기본적인 학문이므로, 법학을 이해하여 현실에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정치와 사회와의 관계·법제사·국가의 정치제도·행정제도·사법제도·경제문제 나아가 국제관계 등에 관한 학문의 지식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법학기초학문에 포함하고 있는 영역은 프랑스의 법과대학별로 다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이를 이수하는 시기는 L1과 L2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랑스 법학교육의 본산이라고 볼 수 있는 Paris 2대학과 프랑스 남부지역 법학교육의 중심지인 Aix-Marseille 3대학이 DEUG 과정과 L1·L2에서 개설하고 있는 법학기초학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Paris 2대학 DEUG 과정의 1년차 1학기

① 필수과목

- 가. 민법학과 법학입문 (Introduction à l'étude du droit et du droit civil, cours : 37h 30, TD : 15h)
- 나. 헌법 (Droit constitutionnel, cours : 37h 30, TD : 15h)
- 다. 법사학입문 (Introduction Historique au droit, cours : 37h 30)
- 라. 사법제도, 행정제도(Institutions judiciaires, Institutions administratives, cours : 37h 30)
- 마. 현대경제문제 (Problèmes économiques contemporains, cours : 37h 30)

2) DEUG 과정의 1년차 2학기

① 필수과목

- 가. 민법 (Droit civil, cours : 37h 30, TD : 15h)
- 나. 법제사 (Histoire du droit et des institutions, cours : 37h 30, TD : 15h)
- 다. 헌법 (Droit constitutionnel , cours : 37h 30, TD : 15h)
- 라. 국제관계 (Relations internationales, cours : 37h 30)
- 마. 정치학 (Science politique, cours : 37h 30)

② 선택과목

- 가. 경제분석 (Analyse économique, cours : 37h 30)
- 나. 현대정치와 사회역사 (Histoire contemporaine politique et sociale, cours : 37h 30)
- 다. 인법과 물법의 역사(Histoire du droit, des personnes et des biens, cours : 37h 30)
- 라. 미디어학입문 (Introduction à l'étude des médias, cours : 37h 30)

DEUG과정의 2년차부터는 전공교과목으로 진입하여 민법·형법·상법·행정법·형사소송법·재정법·유럽법일반원칙을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초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선택과목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1학기의 선택과목으로는 고대정치사회제도사(Histoire des institutions politiques et sociales de l'antiquité, cours : 37h 30) 채권법사(Histoire des obligations, cours : 37h 30) 2학기의 선택과목으로는 기업과 회계관리(Gestion de l'entreprise et comptabilité, cours : 37h 30) 커뮤니케이션법 입문(Introduction au droit de la communication, cours : 37h 30) 등을 개설하고 있다.⁷⁹⁾

(3) 법학 기본교과목과 외국어 강화교육

1) 법학기본교과목

프랑스 법학교육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법학 기본교과목 강좌에는 보충연습강좌(TD; travaux dirigés)가 수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본 강좌는 학생수 400-1,800명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형 강의실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출석점검은 행해지지 않으며 강의시간 중에는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로만 진행되므로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학생 개개인별로 상당한 편차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 강좌 중 일정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30여명의 학생들로 구성되는 소모임을 TD 강사가 주당 1시간 30분 지도하게 된다. TD는 교수에 의해 이루어진 기본 강의를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의 내용을 통하여 구체적 사례를 이해하도록 하거나 강의의 내용을 심도깊게 이해시키고자 함에 있다. 따

79) Aix-Marseille 3 대학의 L1과 L2의 교과과정도 L1에서는 법학기초과목에 비중을 두고 L2에서는 전공교과목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Paris 2대학의 기본틀과 동일하지만 교과목의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라서 TD 시간에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적극적 참여에 의해 학생들은 TD 시간을 통하여 각 교과목당 다소 상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해하게 되며, 기본강좌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게 된다. 기본교과목 강좌에 대한 평가는 3시간에 걸쳐 치루어지는 기말고사점수와 TD 강사가 부여하는 평소실력점수의 합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TD강의를 통하여 관련 판례에 대한 평석이나 학설에 대한 분석, 사례 풀이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연습과목에 상응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종전 프랑스 법학교육을 이해함에 있어 프랑스에서는 연습과목이 없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프랑스 법학교육을 살펴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본강좌와 동시에 사례와 판례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보다 현실감 있는 교육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TD강좌는 DEUG 1학기부터 시작되며 Maitrise과정까지 계속되며 매 학기별로 2-3과목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Paris 2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TD강좌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 1) DEUG 1학기의 TD : 민법학과 법학입문 · 헌법
- 2) DEUG 2학기의 TD : 민법 · 헌법 · 법제사
- 3) DEUG 3학기의 TD : 민법 (채권법) · 행정법 · 형법
- 4) DEUG 4학기의 TD : 민법 (채권법) · 행정법 · 형사소송법
- 5) Licence 과정의 TD : Licence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개의 전공영역으로 나뉘어지고 있으나, 어느 전공영역을 선택하더라도 13개의 기본강좌를 이수하게 하고, 5개의 TD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 5개의 TD는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시하는 TD강좌 조합군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TD강좌군은 16개이며, TD강좌 조합군과 학기별 TD강좌는 아래 표와 같다.

Combinaisons de T.D. possibles
option 1 : 1-2-3-4-8-9-11*-13-14-16
option 2 : 5-6-7-10*-15*
option 3 : 12

Combinaisons de T.D répartis par semestre

1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des affaires 1 Droit du travail 1 2ème semestre Droit des affaires 2 Droit du travail 2	Combinaison n°2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des affaires 1 Procédure civile 2ème semestre Droit civil 2 Droit des affaires 2	Combinaison n°3 1er semestre Droit des affaires 1 Droit du travail 1 Procédure civile 2ème semestre Droit des affaires 2 Droit du travail 2	Combinaison n°4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des affaires 1 Droit du travail 1 2ème semestre Droit civil 2 Droit des affaires 2
Combinaison n°5 1er semestre Droit des affaires 1 Droit international public 1 Droit communautaire 1 2ème semestre Droit administratif Droit communautaire 2	Combinaison n°6 1er semestre Droit international public 1 Contentieux administratif Droit communautaire 1 2ème semestre Droit administratif Droit communautaire 2	Combinaison n°7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international public 1 Droit communautaire 1 2ème semestre Droit administratif Droit communautaire 2	Combinaison n°8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des affaires 1 Procédure civile 2ème semestre Droi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Droit des affaires 2
Combinaison n°9 1er semestre Droit des affaires 1 Droit du travail 1 Droit civil 1 2ème semestre Droit des affaires 2 Droit fiscal	Combinaison n°10 1er semestre Droit international public 1 Contentieux administratif Histoire du droit administratif 2ème semestre Droit administratif Droi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Combinaison n°11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des affaires 1 Histoire du droit de la famille 2ème semestre Droit des affaires 2 Droit civil 2	Combinaison n°12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des affaires 1 Droit communautaire 2ème semestre Droit allemand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Droit des affaires 2

Combinaison n°13	Combinaison n°14	Combinaison n°15	Combinaison n°16
1er semestre Droit des affaires 1 Droit civil 1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du travail 1	1er semestre Contentieux administratif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des affaires 1
2ème semestre Droit des affaires 2 Droit fiscal Droit administratif	2ème semestre Droit du travail 2 Droit fiscal Droit administratif	Histoire du droit administratif 2ème semestre Droit administratif Droit fiscal Droi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2ème semestre Droit des affaires 2 Droit civil 2 Droit administratif

2) 외국어교육강화

법학 뿐만아니라 경제학 · 사회학 · 행정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된 특징이 외국어 교육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으로의 진행속도가 가속도함에 따른 변화라 보여지며, 독일과 영국과의 공동학위제의 시행과 내실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법률시장의 개방과 국제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학문적 지원이라 할 것이다. 행정학이나 경제학 등에서는 외국어를 영어로 한정하고 있는데 비해 법학분야에서의 외국어는 영어 뿐만아니라 독일어 · 스페인어 · 이탈리아어 · 러시아어 등으로 확대되어 있음이 다른 학문 영역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외국어의 교육방법도 학생들의 어학수준에 따라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영어의 경우는 초급 · 중급 · 고급으로 분류하여 가급적이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로 그룹화하여 수강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페인어와 독일어는 두개의 수준으로 분류하고, 이탈리아어는 단일반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그룹별 수준여하에 관계없이 기말고사는 동일하게 치루어진다. DEUG 과정 중에는 수준별 강의가 이루어지지만 Licence과정 부터 외국어는 단일반으로만 운용되기 때문에 외국어수강을 초급반으로부터 출발하는 학생들은 DEUG 과정 동안 어학실력의 향상이 불가

피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Licence과정부터의 수강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어학원(Département de Langues)에서는 어학수준이 다소 부진한 학생들의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으며, 수강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외국어 중의 하나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물론 어학원의 도서관과 어학실이 개관되어 있는 동안 학생들은 누구나 이 시설물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각과정별로 행해지고 있는 외국어교육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DEUG 1년차

이 기간동안 공식적인 외국어 교육은 없지만, 기존의 외국어실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2년차에서 이수해야할 외국어의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학자료센터(Centre de Ressources en Langues)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거의 자율적으로 학습하며, 학생들의 관심은 Licence 또는 Maitrise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외국대학에서의 유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DEUG 2년차

DEUG 2년차부터 외국어는 필수교과목이 된다. 주당 2시간 연간 50시간의 교육을 받게되며, 각 학기당 1학점씩 도합 2학점을 부여받게 된다. 성적은 다른 전공교과목과 마찬가지로 평소실력점수 (la note de contrôle continu)와 기말시험점수를 각 50% 산정하여 평가한다.

③ Licence 과정 이후

DEUG 과정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필수적이며 50시간 행해지는데 비해, Licence 과정에서부터 외국어교육은 선택과목이 되며 외국어의 내

용도 법학의 심도깊은 이해를 돕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강의는 2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을 대상으로하여 외국인 법학자가 담당하고 있다. Licence 와 Maitrise 과정의 종강에 즈음하여 영어·독일어·스페인어·이태리어·러시아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구술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모든 학생들에게 부여하는데, 이 시험에서 통과되면 2학기 보충학점으로 최대 3학점까지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보충학점을 위한 어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가 시작한 이후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사이에 신청하여야 하며, 외국어별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어학원이 5월말에 공고하고 있다.

(4) LMD별 직업교육과 이론심화교육

1) 직업교육

법학은 사회전반에 적용되는 학문이므로 법학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영역은 대단히 넓다. 또한 선진 법치사회가 성숙해 갈수록 법학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 대학생 대비 법학도의 비율을 고려해 본다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법학적 수요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본다. 2002-2003학년도에 프랑스 대학내에 등록된 학생 전체수가 131만명이었으며, 그중 법학-정치학 분야에 등록된 학생수가 17만 5천명이었으며 법학-정치학 분야 등록 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법학분야에 등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대학생 대비 법학도 비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프랑스 사회의 다양한 직업군 중 법학을 전공한 사람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LMD 교육제도에 의하면 이론교육을 지속하는 경우와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두차례 나타나게 된다. 첫 번째의 시기가 L3에 나타

나며, 두 번째는 M2시기에 나타난다. L1과 L2까지 모든 법학도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소 상이하겠으나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비하여 L3에서는 직업반 학생과 진학반 학생이 구별된다. 그러나 L3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진학반으로 집중하고 있으므로 직업교육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M2시기의 경우에는 이론교육과정의 학생수 보다 직업교육과정의 학생수가 오히려 많아지며, 전공영역 또한 이론교육과정보다 직업교육과정이 더욱 다양하게 세분되고 있다.

M2의 직업과정이나 DESS과정에서의 교육내용도 세분화된 직업군이 요구하는 실무중심형 교육내용과 수습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Master 학위나 DESS학위를 취득하면 곧바로 실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학사-석사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론 연구과정으로만 편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에서의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2) 세분화된 전공이론심화교육

LMD 별 교육제도에 의하면 Licence 과정은 전공일반교육과정, Master 과정은 전공전문교육과정, Doctorat 과정은 전공전문이론심화과정으로 구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 대학원과정에서는 이수 학점수가 대폭 감소하는 데 비하여, 프랑스에서는 Master과정과 Doctorat과정에서도 Licence 과정에서의와 마찬가지로 한학기 30학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수해야 할 교과목의 수가 평균 8개과목 정도가 되며 그중 절반 정도는 세미나 과목으로 편성된다. 따라서, 프랑스의 법학도로서는 Master 과정이야말로 전공영역 중 전문분야를 확정하고 습득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Master 과정에서 M1 기간 동안은 연구과정과 직업과정의 구분이 없으며, 전문영역의 구별도 10여개에 불과하며 또한 학교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paris 2대학의 경우와 같이 독일법·영국법·유럽법·스위스법·비교법 등과 같은 외국법영역에 비중을 두고 있는 영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의 분류영역과 크게 다를바 없으나, 연구과정과 직업과정이 구분되는 M2기간에는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구과정은 20여개, 직업과정은 30-40개의 전공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프랑스 법학교육의 전망

수세기를 거치며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프랑스의 법학교육은 프랑스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였으며, 사회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며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견인차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프랑스의 법학교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실무교육이 행해지지 아니하는 교육제도라는 점에서 일부 비판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2004-2005학년도부터 LMD 제도를 수용하여 시행함으로써, 법학사의 취득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법학석사학위의 취득기간을 2년으로 공식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육기간과는 별도로 프랑스의 법학교육은 DEUG 과정 또는 L1·L2과정을 지나면 매년 자신의 전공영역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며, 나아가 점진적으로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개척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 LMD 제도 이전에 프랑스가 시행한 고등교육에서의 3주기 교육의 장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학부나 학과를 선택한 이후에는 본인의 적성이나 관심을 고려하여 일정한 전공영역이나 전문분야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으로서 프랑스의 제도가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법과대학의 교과목 운용 방향은 기본교과목을 중심으로 실체법 - 절차법 - 연습강좌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법 영역도 직업영역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의 설감이 어려운 것이 실정이며, 사법시험의 교과목 중심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과대학생들은 4년간 법학을 이수하였다도 사법시험을 계속하여 준비하지 않는 경우 법학사 취득이후 사회의 다양한 직업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개별적으로 새로운 취업준비를 행하거나 또는 전문분야를 스스로 개척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 달리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본교과목에 대하여 실체법 이론강좌와 이를 보완하는 보충연습강좌(TD)를 동시에 행하며 법학선행과목에 대한 이수를 통하여 인접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법학의 기초이론을 보완시키는 법학일반교육과 Master 과정 이후의 법학전문교육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aster 과정에서는 연구반과 직업반을 별도로 운용하여 직업반으로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해당 직업영역에서 요구하는 특수법영역에 대한 전문교육을 행하고 나아가 유관 실무기관에서의 1-3개월 정도의 수습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문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 프랑스의 변호사 교육기관은 이러한 전문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M2 과정에서의 특별한 하나의 직업학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M2 직업반을 이수한 학생들은 Master 학위를 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영역에서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학교육의 핵심을 법과대학의 4년과정에 두고 있다면, 프랑스 법학교육의 핵심은 Master 과정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법학 뿐만아니라 다른 학문 영역에서도 외국어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겠으나, 세계화의 경향과 유럽연합의 확대는 프랑스 법학교육에서 영어·독일어·스페인어·이태리어·러시아

어 등 다양한 외국어교육에 대한 요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직역에서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법학교육의 기본방향은 변호사와 법관·검사 등 주요 법조직역 종사자를 양성하는 데 있을 것이지만, 법학교육이 학생들의 선호에 따른 다양한 직업영역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완될 때 사회의 전 영역에서 법치주의의 구현이 보다 앞당겨 질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9 장 결 어

프랑스의 교육체제와 교육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제는 학생들의 취업과 이론적 연구라는 두가지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다. 교육은 직업을 도외시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직업적인 기술을 연마하고 훈련하기 위한 것을 프랑스 공교육은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통교육, 무상교육,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과 결부된 실용교육을 지향하면서도 학문적 탐구와 연구를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로 추구하는 프랑스 교육은 고등교육의 다양화와 심화교육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4년간 학부의 이수로 고등교육을 마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겠으나, 프랑스의 경우 고등교육은 학부 이후 석사과정 이수과 박사과정 전반부에 해당하는 DEA 과정 혹은 M2 과정까지의 이수를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대학 진학 이후 어떠한 구체적인 전공영역에 대한 능력을 함양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개인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까지는 대학 입학에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문적인 직업적 진로는 대학 이후 본인의 의지와 실천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면학에 몰두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이후의 전공 영역에 대한 선택도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매 학년도 마다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 영

역에 대한 심화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매학년 마다 다른 영역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공 영역에 대한 자신감을 결여한 학생들이 다른 전공 영역에 눈길을 돌리게 되고 이는 결국 고등교육의 실패율을 확대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전공영역과 개인 적성간의 불일치 문제는 현저히 줄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프랑스 사회를 이론과 실무를 현실 직업세계에서 융합하도록 하는 무시할 수 없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교육제도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떨어져 우수한 학생들과 열등한 학생들간의 간격이 크다는 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단기적인 직업교육을 통한 조기 취업정책을 취함으로써 국가의 교육 수준이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는 점, 높은 수준의 직업인력 확보와 장기적인 의무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라는 공교육의 취지에 맞는 교육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 현안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바깥로레아의 선택과목이 너무 많으며 모두 논술식으로 출제함으로써 채점의 공정성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논술 채점에 따른 제도의 비효율성과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바깥로레아 합격률의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수학능력과 자질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⁸⁰⁾.

글로벌화 하는 교육의 문제는 프랑스나 우리나라와 같은 개별국가의 내부적 문제에만 머물고 있지 아니하며, 이미 국제간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학의 경쟁력을 국가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한 대학개혁법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프랑스 교육능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르코지의 대학 개혁 기본 방향은 대학에게 보다 많

80) 박동준, 전제논문, p.401.

은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수준을 첨단화하고 이론적인 심화를 가져오도록 하는데 있지만, 대학의 자율성 강화는 프랑스의 국제사회에서의 학문적 우월성을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로뉴 교육협약에 따라 이미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LMD제도와 국제교류활동 및 외국어 교육 강화는 우리나라의 교육에도 멀지않아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 볼 수 있다.

프랑스 교육의 국제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교육에 시사하는 프랑스 교육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지방교육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영역에서 국가교육과 지방교육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교육 수준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식은 국가 교육체제의 질적 관리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교육의 양적 발전 보다 질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프랑스의 사례에 대한 접근은 우리나라 지방교육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라 하겠다.⁸¹⁾

교육에서의 국제화와 지방화가 단기적 계획과 중·장기적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고등교육에서의 석사 및 박사 과정 등 심화과정의 일반화가 조만간 국가적 현안 논제로 부각되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점 발견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한 필수적인 보완제도로써 초등학교 교육기간 단축문제와 학년도별 학사일정과 교육내용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81) 황성원, 전계논문, p.125.

참 고 문 헌

단행본

국 내

- H. C. 바너드, 서정복 역 : 프랑스 혁명과 교육개혁, 삼지원, 서울, 1993.
교육부, 지표로 본 프랑스 교육, 교육부 교육정보화국, 1998.
신용석, 현장에서 본 프랑스 교육, 서당, 서울, 1991.
바너드(H. C.), 서정복역(1993), 프랑스 혁명과 교육개혁, 서울 : 삼지원.
백종익(1996),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 서울 : 교육과학사.

프랑스

- Académie de Rouen, Plan académique de formation 2001 2002.
Albertini, P.(1993). L'école en France XIXe XXe siècle de la maternelle à l'université, Paris : Hachette.
Anne CABOCHE, Aperçu du système éducatif français, Centre international d'études pédagogiques, Paris, 1992.
Bernard TOULEMONDE, Le Système éducatif en France, Les notices de la Documentatin français2, Paris, 2006.
Chantal DEMONQUE, Qu'est ce qu'un programme d'enseignement?, Hachette, Paris, 1994.
Claude DURAND PRINBORGNE, Le Système éducatif français, Les

참 고 문 헌

- cahiers français, Paris, 1994.
- Jean Louis AUDUC, Jacqueline BAYARD PIERLOT : Le Système éducatif français, CRDP, Paris, 1994.
- Jean Pierre LEHNISCH, L'Eseignement à distance, Que sais je, PUF, Paris, 1981.
- Français LOUIS, Décentralisation et autonomie des établissements, Hachette, Paris, 1994.
- Gaston MIALARET, La Formation des enseignants, Que sais je, PUF, Paris, 1977.
- Sabine MONCHAMBERT, L'Enseignement privé en France, Que sais je, PUF, Paris, 1993.
- Sylvie KARSENTY, Bien choisir son Ecole d'ingénieurs, l'Etudiant, Paris, 1994.
-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Les Cycles à l'école primaire, Hachette, Paris, 1991.
-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Collèges, CNDP, Paris, 1985.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a Culture : Rapport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Education national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1992.

논 문

국 내

- 곽동준, 프랑스 교육제도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2집, 2003, 381-404.
- 김신호, 전세경, 이명주(2001), 초등교육 양성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초등교육연구, 14(3), 89-116.
- 박순경, 김수동, 노국향, 정영근, 황성원(2001),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비교 연구 (III)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질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부련(2003), 교육지역화를 위한 프랑스의 교육정책과 교육실천, 프랑스학연구, 26권, 415-446.
- 전효선(2002), 프랑스의 교원양성체제, 프랑스의 교사교육대학원(Instituts Universitaires de Formation des Maîtres)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16집, 123-143.
- 최선숙(2002), 프랑스의 교사들, 교육비평, 7, 171-185.
- 한민주(1998), 프랑스의 교사교육제도 개혁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연구, 비교교육연구, 8(1), 169-189.
- 한지혜(2002), 프랑스 유아초등교사교육제도 : 국가교사양성기관(IUFM)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2(2), 289-312.
- 허경철, 이미경, 손민호, 강영민, 황성원(2002),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비교 연구 (IV)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황성원(1998), 프랑스 초등교육의 발달, 특징, 수업에 관한 일 고찰, 초

참고문헌

등교육연구, 12(2), 101-125.

황성원(2001), 프랑스 :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되는 엄격한 교원제도, 초등교육, 신년특집호, 78-85.

황성원(2001), 프랑스의 국가 교육과정 지역화 방식에 관한 연구, 비교교육연구, 11(2), 91-131.

황성원(2006), 프랑스의 교사교육 개혁 동향, 2006년 한독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63-88.

프랑스

Avanzini, G.(1991). L'école, d'hier à demain. Des illusions d'une politique à la politique des illusions, Toulouse : Erès.

Baudelot, Ch. & Establet, R.(1975). L'école primaire divise, Paris : Maspero

Cahier des charges de la formation des maîtres du premier degré 2001-2002. Boissinot. Bosssard. Nembrini. Reiffers(2003). La formation initiale et continue des maîtres. Ministère de la jeuness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a recherche.

CDIUFM (2005),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es enseignants en IUFM. Cahier des Charges. Conférence des directeurs, 14p.

Decaunes, L. & Cavalier, M. L.(1962). Réforme et projets de réforme de l'enseignement français de la révolution à nos jours(1789-1960), Paris : Institut pédagogique National.

Durkheim, E.(1990(1938)). L'évolution pédagogique, Paris : Puf.

Fauroux, R. & Charcornac, G.(1996). Pour l'école, Paris : Calmann Lévy.

Lelièvre, C.(1990). Histoire des institutions scolaires, 1789 1989, Paris : Nathan.

Maison des Universités (2006). Charte pour une bonne intégration de l'IUFM à l'Université, Dix éléments à prendre en compte, <http://www.amue.fr/Outils/>

Mayeur, F.(1981). Histoire générale de l'enseignement et de l'éducation en France, T. III, Paris : Nouvelle Librairie de France.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2001), La formation initiale des professeurs et des conseillers principaux d'éducation en deuxièmes années d'IUFM. Rapport.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2003), La formation initiale et continue des maîtres, Rapport n0 03 013.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2005),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e pour l'avenir de l'école, Bulletin Officiel du 24 4.

그 외 자료

<http://www.education.gouv.fr>

<http://www.educasource.education.fr>

<http://men.lu>

<http://www.cndp.fr>

<http://www.iufm.fr>

<http://www.educaton.gouv.fr/>